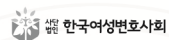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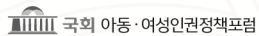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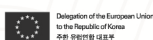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2018년 8월 28일 (화) 오후 1시-6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공동주최



후원





## 축사

- 007 문희상 국회의장  
009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인사말

- 011 정춘숙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013 김삼화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015 권미혁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017 남인순 의원 (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020 이내영 처장 (국회입법조사처)  
022 송병국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4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026 조현욱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027 김지형 이사장 (사단법인 두루)  
029 한영수 회장 (한국YWCA연합회)  
031 최영희 이사장 (탁틴내일 (ECPAT Korea))  
032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 Session 1: 국가별 보고

- 039 1. 유럽연합 : 조엘 이보네 Dr. Joë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049 2. 스웨덴 : 페르-안데시 수네손 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061 3. 영국 : 사라 챔피언 Sarah Champion (노동당 국회의원)  
107 4. 한국 : 조진경 Cho Jin Kyeong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Session 2: 토론

- 153 1. 김현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157 2.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3 3.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69 4. 안수경 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173 5.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ECPAT Korea))  
177 6. 조주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181 7. 여성가족부  
183 8. 법무부

## 기관 소개

- 187 1.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188 2. 국회입법조사처  
189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0 4. 한국여성변호사회  
191 5. 사단법인 두루  
192 6. 한국YWCA연합회  
194 7. 탁틴내일 (ECPAT Korea)  
195 8. 십대여성인권센터
-





## 프로그램

|       |  |
|-------|--|
| 13:00 | <p><b>등록</b></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이만우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p>  |
| 13:30 | <p><b>축사</b><br/>         문화상 국회의장<br/>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p> <hr/> <p><b>인사말</b><br/>         정춘숙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br/>         김삼화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br/>         권미혁 공동대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br/>         남인순 의원 (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br/>         이내영 처장 (국회입법조사처)<br/>         송병국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br/>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 (주한유럽연합대표부)<br/>         조현욱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br/>         김지형 이사장 (사단법인 두루)<br/>         한영수 회장 (한국YWCA연합회)<br/>         최영희 이사장 (탁틴내일(ECPAT Korea))<br/>         서순성 단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p> |
| 14:00 | <p style="text-align: right;">좌장: 강지원 변호사 (現 푸르메재단 이사장/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p> <p><b>Session 1: 국가별 보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연합 : 조엘 이보네 Dr. Joë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li> <li>스웨덴 : 페르-안데스 수네손 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li> <li>영국 : 사라 챔피언 Sarah Champion (노동당 국회의원)</li> <li>한국 : 조진경 Cho Jin Kyeong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li> </ol>   |
| 16:10 | <p style="text-align: center;">휴식</p>  |
| 16:20 | <p><b>Session 2: 토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현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li> <li>김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li> <li>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li> <li>안수경 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li> <li>이현숙 대표 (탁틴내일(ECPAT Korea))</li> <li>조주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li> <li>이금순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li> <li>신희영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li> </ol>  |
| 17:30 | <p style="text-align: center;">질의응답 (플로어 포함 전체 토론)</p>   |



## 축사



문희상 대한민국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 깊은 공문의 장을 마련해주신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춘숙·김삼화·권미혁 공동대표님과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진적 사례 발표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주신 스웨덴의 Per-Anders Sunesson 반인신매매대사님, 영국의 Sarah Champion 노동당 국회의원님과 유럽연합의 Joë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님께 각별한 마음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전문가와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 등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시기에 받은 상처는 자칫 인간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착취 등 성범죄가 근절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충분한 사회적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률적 노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 역시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철저히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럽연합국가, 스웨덴, 영국 등의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통해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제세미나를 개최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귀빈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영국의 Sarah Champion 의원님, 스웨덴의 Per-Anders Sunesson 반인신매매대사님과 주한EU대표부의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님 환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한국YWCA연합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EU대표부, 탁틴내일(ECPAT Korea)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행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셨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착취이자 폭력입니다. 이에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보편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지으면서 이들을 피해자가 아닌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대상이자, 국가에 의해 선도되어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보호처분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 성매매를 강요하는 협박의 수단으로 보호처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삶의 끈을 이어나가고자 성매매라는 최악의 수단에 발을 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들은 성착취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도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척결에 있어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다줄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를 마련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먼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권미혁·김삼화 의원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YWCA연합회, 탁틴내일(ECPAT Korea),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매매에 유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법상의 규제 및 처벌 부재를 문제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및 문제제기를 한지 2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동·청소년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루밍’ 상태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유입위험에 놓여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하여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성매매 알선자들이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협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성착취 근절 정책에 한발 앞선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끝으로, 귀한시간 내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의원  
 바른미래당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정성껏 준비한 발제와 토론으로 세미나의 깊이를 더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등을 이용한 성매매 연결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관련 법령이 없어 청소년들이 성매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폭행, 강간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제 세미나를 통해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제가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사이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입법 과제 등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권미혁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먼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한국YWCA연합회, 탁틴내일(ECPAT Korea),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 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로 잘 곳이 없거나 돈을 준다는 유혹, 배가 고파서 등을 언급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 경험하는 성매매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평생에 걸친 상처와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보호처분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 등의 종류로 이루어져, 성구매자는 이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은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한 아동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방식으로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성매매의 가장 많은 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1:1 조건만남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매매 유인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미나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여성인권포럼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아동법 개정안 통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찰청의 조사 및 수사과정 문제나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상의 알선 문제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 영국과 스웨덴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과 성착취 피해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함께 주최하시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한국YWCA연합회, 탁틴내일(ECPAT Korea), 십대여성인권센터,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여성가족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상에서 손쉽게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경제적 능력 등 많은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성인은 가정에서 벗어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곤란하고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성 매수자를 처벌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지 않고 성매매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제38조제1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정작 “보호와 재활”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절차는 다른 범죄자들이 거치치는 절차와 유사하여 사실상 ‘처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은 이러한 보호처분의 특성이나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지속적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성매매 문제는 제가 지난 6년간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단체와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저는 아청법상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대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일시보호·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국가별 발표를 해주시는 유럽연합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님, 스웨덴 외교부의 페르-안데시 수네손 반인신매매대사님, 영국의 사라 챔피언 의원님,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이 김현아 변호사님,

한국청소년연구원의 김지연 선임연구원님,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님, 한국 YWCA연합회의 안수경 Y-틴 위원장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주은 입법조사관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국제 세미나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함께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이내영** 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깔기만 하면 성인들이 손쉽게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면 어른과 사회를 불신하며 인격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장기간 재난에 버금가는 인권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성매매라기보다는 성착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세미나는 이러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한국YWCA연합회, 탁틴내일(ECPAT Korea),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여 마련된 귀한 자리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하셨던 강지원 변호사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조엘 이보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페르-안데시 수네손 스웨덴 반인신매매대사, 사라 챔피언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발표를 해주십니다. 멀리 유럽에서 이 세미나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해주신 발표자분들은 평생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철폐와 권리옹호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더불어 공동주최기관의 전문가들과 행정부 관계자분들이 토론을 맡아서 진행하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에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지위를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앞서 축사를 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김삼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합리적인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를 넘어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신만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화 방안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유용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공동 국제세미나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인사말



**송병국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최영희 탁틴내일(ECPAT Korea) 이사장님을 비롯한 남인순 국회의원님, 그리고 공동주최 기관의 기관장과 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국제세미나는 무려 8개 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보기드문 행사입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일 뿐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미투운동’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와 왜곡된 성의식에서 뿌리내려 오랫동안 여성들의 삶을 유린한 성폭력·성희롱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구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착취)의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있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성범죄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그 어떤 행태보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이미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에는 각종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세미나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EU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또 대안을 토론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 결과가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구체적으로는 성폭력과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안녕하십니까,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입니다.

금번 국제 세미나의 후원 단체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을 대표하여 한국에서 유럽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과의 외교, 통상 관계 협력을 증진하며, EU 회원국 간 조정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총 2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가 연합체이며,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을 아우르는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나 인권과 세계 평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유럽연합은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과 소외받는 여성과 아동들의 권리신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고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성매매와 성폭력은 나날이 다각화되어 가고 있고, 그 방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세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이러한 세태를 인지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이 이슈에 대해 협력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유럽전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회원국인 스웨덴과 영국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께서는 각 국가의 입법례와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제와 토론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이 더 긴밀히 공조하고, 모든 아이들이 더 보호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 인사말



조현옥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옥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에 대한 성(性)인식의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매수 범죄, 특히 10대 여성에 대한 성매수 범죄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10대 여성에 대한 성매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피해아동·청소년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선책이 마련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장 선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는 영국과 스웨덴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로 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모두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사말



**김지형 이사장**  
사단법인 두루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YWCA연합회, 탁틴내일(ECPAT Korea),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아동·청소년인권, 장애인권, 국제인권, 사회적경제를 주된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설립 이후 십대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자문·상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운동과 법률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초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시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입법취지를 외면한 채 제자리걸음입니다.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를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고려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 존중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성매수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달리 보아서는 안 됩니다. 1999년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성매매에 관한 국제정책의 효시가 된 스웨덴, 2013년부터 모든 법령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로 바꾸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자로 분명히 한 영국의 발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입법부와 행정부, 국책연구기관, 현장단체, 법률가 등이 한 데 모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인사말


**한영수 회장**  
(사)한국YWCA연합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YWCA는 지난 96년간 여성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으로의 복귀, 건강한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육과 예방 사업들 또한 주요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온 한국YWCA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와 고통을 청소년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성을 판매한 청소년의 비행 행동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사회와 가정의 무관심과 빈곤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성매수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은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숨기고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국가별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법과 시스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YWCA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중요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먼 곳에서 와주신 발제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최영희 이사장**  
 탁틴내일 (ECPAT Korea)

---

안녕하십니까? 탁틴내일 (ECPAT Korea) 이사장 최영희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들의 투쟁과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성적인 착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발달은 범죄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아이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어린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나 가장 취약한 대상인 아동과 여성의 문제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아동성착취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여년 전, 스웨덴이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연루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선포하면서 많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노르딕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세계에 영감을 주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작은 도시 로더럼에서 시작한 시민들의 노력과 법제화 성과 또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움직임을 참고하여 지혜를 모으고자 모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불법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제반 기술적인 조치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가 한국 사회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을 위해 가장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 1) 한국사회는 끊임없는 성범죄 소식에 놀라움도 식상해 질 지경이다. 성범죄는 특정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연령, 계급, 학력, 직업, 지역 등 여성을 구별하는 다양한 범주, 그 어느 것에도 예외는 없다. 심지어 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폭력이라 여겨지지도 않는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 2) 성매매는 그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게 하며, 돈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성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을 상식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다.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남성이 늘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어떤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성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여성들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도 일상화되는 것이다.
- 3) 한국사회는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매매를 범죄화 하였으며,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성매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성매매 행위자 쌍방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2015년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성차별한 사회에서의 약자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로 규정하고 성매



수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의결하였다. 그 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뜨겁다.

- 4)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중요도에서 밀리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십대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이다. 십대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권력으로 작동하는 연령이라는 범주에서 약자다. 또한 이들은 사회, 경제, 젠더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십대소녀들은 성인에 의해 규율되고 지도되지만, 성적 행위에 있어서는 성인을 리드한다고 여겨진다. 그들이 성인들의 성적 욕망에 소비되고 이용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는 동등하게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십대여성들의 자발성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IT 기술의 진보와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은 십대여성을 돈으로 사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성매수 범죄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십대여성들에게 자발/강제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자를 구분하겠다는 의식과 정책은 점점 저연령화 되고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5) 스웨덴은 1999년 ‘성매수자 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나라이며, ‘노르딕 모형’이라고 하는 성매매에 관한 국제적 정책 모형의 효시가 된 나라이다. 이미 20년 가까이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였고, 그 결과 성매매가 반으로 줄었고, 법 시행 후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매매종사자가 4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95%가 다른 유럽의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 성매매 합법국가인 ‘독일’과 비교할 때도 스웨덴의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었음이 증명된다.
- 6) 영국은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만 18세 이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모든 법령에서 ‘아동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에 대한 ‘성착취’로 변경하였다. 변경 전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도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성착취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인 아동보호는 한 아이에 대해 사회복지사, 경찰, 보건관련 전문가, 의료 정신건강 전문가, 아동보호기관 등 전문가를 지방정부에서 구성하여 매월 1회씩 모

여 위험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영역에서 한 아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피해아동을 지원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어 공유한다.

- 7) 이에 한국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 지속화시키는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시도로써 스웨덴과 영국의 모범 사례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 시기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며 가장 시급한 일이다.

위 글은 오늘 열리는 ‘2018 서울국제세미나’ 개최를 위해 작성한 기획서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현장에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면서 ‘아청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분명히 재정의 하고 그에 따른 피해지원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국제세미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된다면 준비한 입장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Session 1

## 국가별 보고

좌장 강지원 변호사

(現 푸르메재단 이사장 /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유럽연합

조엘 이보네 Dr. Joë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 스웨덴

페르-안데시 수네손 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 영국

사라 챔피언 Sarah Champion

(노동당 국회의원)

### 한국

조진경 Cho Jin Kyeong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강지원 변호사

(現 푸르메재단 이사장 /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좌장 소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 경력

-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200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 2006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 2008년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9년 나눔플러스 총재
- 2010년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 2011년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
- 2011년 타고난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상임대표
- 2015년 노르딕워킹 I.K 총재
- 2016년 민세 안재홍 기념사업회 회장
- 2016년 신간회 기념사업회 회장
- 2016년 푸르메재단 이사장
- 2017년 통곡물자연식운동본부 상임대표

### 상훈

- 2007년 국민훈장 모란장
- 2003년 대통령표창
- 2000년 인재인성대상
- 1991년 홍조근정훈장 등

### 저서

- 꿈 같은 거 없는데요
- 강지원의 꿈 멘토링 - 세상 어디엔가 내가 미칠 일이 있다
- 강지원 생각, 큰바위얼굴 어디없나
- 나쁜 아이는 없다 등 다수





조엘 이보네 Dr. Joëlle Hivonnet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Session 1  
국가별 보고

유럽연합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조엘 이보네(Joëlle Hivonnet)는 1992년 유럽 공무원이 되어 브뤼셀, 뉴욕, 제네바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16년 서울에서 주한EU 대표부에 부대사로 합류했다. 유럽연합[EU]에서 일하면서 이보네는 유럽의 차별금지 지침과 새롭게 만들어진 유럽사회 아젠다 수립에 기여했으며, 유엔에서 EU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유럽대외관계청 중국지부에서 근무하면서 EU-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중국의 대EU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인권에 대한 유럽협약 비준의 결과 [Paris X-1987]”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쓴 바 있다.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 1997).

Joëlle Hivonnet is a French national. After working as a university lecturer in the United Kingdom, she became a European Official in 1992 and worked in Brussels, New York and Geneva before joining the EU Delegation in Seoul in 2016, where she is the Deputy Head of Mission. In the course of her EU career, she has contributed *inter alia* to the European anti-discrimination directives and the renewed European Social Agenda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EU at the United Nations. She also worked in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China Division where she contribu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U-China strategic partnership and the new EU strategy on China. She is the author of a Ph.D thesis on “The Effects of the ratification by the United Kingdom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ris X – 1987) and holds an M.A in International politic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 1997).

##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활동

- 유럽연합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를 강력히 반대하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 유럽연합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가 유례없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지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의 범죄는 다른 범죄와 유사하게 초국가적 요소를 획득하여, 지역적 제한이 완화되고 국제범죄 조직들이 이윤창출을 위해 광범위하게 범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어디든 전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뛰어난 카메라가 장착된 저렴한 장치의 사용과 전지구적 범위의 인터넷 서비스는 범죄자가 아동에게 접근하고, 범죄를 계획 및 시행하며,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의 영상, 음성 및 사진을 전송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온라인 게시판, P2P 서비스, SNS,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자들이 아동을 만날 기회 역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아동 성학대 범죄의 경계를 확장하여, 피해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가상세계에서 유포되는 모든 아동 성학대 영상은, 세계 어디인가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은 아동 성학대 및 성 착취 범죄가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활동하기 힘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 국제적인 기준에 관하여, 기준점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협약 당사국입니다. 하지만, 좀 더 야심찬 기획이 필요합니다. ‘란사로테 협약’이라고 알려진 “성착취 및 성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평의회 협약”은, 현존하는 가장 진보적이고 대담한 국제 기준입니다.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협약에 가입한다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물의 강력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럽연합은 이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유럽연합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침 (2011/36/EU) 와 아동 성학대, 성착취 및 포르노그래피 방지에 관한 지침 (2011/93/EU)은 란사로테 협약의 방향과 일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협약 가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을 위한 위 지침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련 국내 법령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 위 지침은 범죄 조사 및 기소,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및 범죄 방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입니다. 지침은 여러 방향에서 작동하여 아동에 대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개 범죄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최저법정형 기준을 규정하고, 신고, 조사 및 기소 절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관할권을 확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역외 범죄도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법적 구제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형사절차의 참여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위험 평가 대상이 되며, 특별 조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죄 및 자격박탈에 대한 정보에 대한 범죄기록 상 조회를 원활하게 하여 형사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학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광고 또는 아동 성매매 관광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인식제고 및 훈련 관련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에 맞선 싸움을 위해 회원국들을 계속 지원하여, 아동들이 지침 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강력한 법체계 도입 외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동들과 부모,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 전역 인식 제고 캠페인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법 집행기관과 인터넷 산업과 제휴하여 아동 성학대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사하기 위한 정보 보고서를 수집하는 비영리단체 핫라인 연합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INHOP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과거 더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Safer Internet Programme)을 통해 지원, 현재 유럽연결기반시설펀드(Connecting Europe Facility)를 통해 지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학대 사진의 온라인교환과 실시간 성학대 도구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합니다. 유럽금융연합 (European Financial Coalition)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은행, 결제 시스템 공급자, 시민단체, 통신회사, 유럽 경찰, 유럽 사법기구, 경찰 및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진 생산, 배포 및 판매 방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법 집행 대응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범죄위험에 대한 다분야 기반 유럽정책 (EMPACT)를 지원하여 아동 성학대 범죄 대응을 협력하고 있으며, 인터폴을 재정 지원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법 집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행동으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는 2012년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국제연대는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위프로텍트 (WeProtect) 이니셔티브와 통합하여, 위프로텍트 국제연대 (WeProtect Global Alliance)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82개국이 가맹국으로, 20개의 IT기업, 24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국제연대와 함께 한 회원국이며 각별한 노력과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피해 아동의 보호, 기소 촉진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채택한 사실을 국제연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예시로 언급하려 합니다. 성범죄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한국경찰의 인터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사용, 가상 국제 TF(Virtual Global Taskforce)와의 협력, 범죄자들의 자격박탈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범죄로부터 아동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조치 등.

-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국가와 사회에 가용한 도구들이 우리 목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도구들을 더 많이, 더 잘 사용하여 단 한 명의 아동도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처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동 성범죄와 재앙과 전세계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The EU (Commission's) work in the area of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The EU reiterates its strong position against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its commitment to bringing change in this area.
- We know that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with the unprecedented developments in technology. This also means that whereas previously criminals were limited in scope geographically, this crime like many others has now acquired a trans-border element, has become less contained and is being exploited more broadly by international criminal groups as a means of revenue. In particular, the almost global coverage of Internet Services and the use of inexpensive devices with good cameras and capabilities to send electronic data across the world have made it easy to gain access to children, plan and execute crimes and transmit video, sound and images capturing their perpetration through encrypted instant messaging and live web-streaming.
- Furthermore, th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and their abusers through online forums, peer-to-peer exchanges, social media and anonymous networks are also plentiful. This trend has pushed the boundaries around the crime of child sexual abuse further, encouraging abuse of children of much younger ages, bumped up the demand for more atrocious and extreme content and increasing the urgency for action to be taken in a holistic all-encompassing manner to bring about societal change.
-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every piece of child abuse material that circulates in the virtual environment represents actual physical abuse taking place somewhere around the world against the child being featured.

- The EU recognises that crimes of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ave a global dimension, It is imperative that a global net is created where criminals and abusers find it difficult to operate. This requires **global standards** and **global action** to put them into practice.
- With regards to **global standards**, the baseline is the Optional Protocol on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Virtually all countries worldwide, with few exceptions, are parties to it. However, there is a need for more ambition.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also known as Lanzarote Convention. The Convention is arguably the most advanced and ambitious international standard in this area today. It is open to Parties outside the Council of Europe. The Republic of Korea may consider joining the Convention and become a strong link in the net that is being cast.
- For its part, the EU has taken legislative action by setting out two key EU ‘laws’ relevant to the issue. The Directiv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2011/36/EU) and on combating the sexual abus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2011/93/EU) are aligned with the Lanzarote Convention and facilitate the ratification by EU Member States. These legislative actions have brought about the approxim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within all EU Member Sta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protect child victims and prosecute offenders.
- The Directive i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which cover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s,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prevention. The Directive makes it easier to fight crimes against children by acting on different fronts. It approximates the definition of 20 offences, sets minimum levels for criminal penalties, and facilitates repor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t extends national jurisdiction to cover abuse by EU nationals abroad, gives child victims easier access to legal remedies and includes measures to prevent additional trauma from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Offenders are to be subjected to risk assessments, and have access to special intervention programmes. Information on convictions and disqualifications are to circulate more easily among criminal records, making controls more reliable. The Directive prohibits advertising the possibility of abuse, or organising child sex tourism, and provides for education, awareness raising and training of officials.

- The Commission will continue working to support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se crimes, to ensure that children benefit from the full added value of the Directive.
- Besides creating a stronger legal framework, the Commission co-funds EU-wide awareness raising to empower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educators. The Commission also supports the INHOPE network of NGO-run hotlines in EU States that works in partnership with law enforcement and the internet industries and collects reports on child abuse websites so that they could be removed and investigated (previously funded under the Safer Internet Programme and currently under the Connecting Europe Facility).
- The Commission has also funded projects targeting the online exchange of child abuse images and facilitation of live abuse. These include the European Financial Coalition, which brings together Internet providers, banks and payment system suppliers, NGOs, telecom companies, Europol, Eurojust and police and judicial authorities. The aim is to comba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child pornography images on the Internet.
- To improve the law enforcement response, the Commission supports the EMPACT (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policy cycle to coordinate action to fight child sexual abuse and continues subsidizing INTERPOL in enhancing glob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in this area.

- With regards to **global action**, the Commis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et up in 2012 Global Alliance against Child Sexual Abuse Online. In the meantime, it has merged with the UK-led WeProtect initiative to form the **WeProtect Global Alliance** to end child sexual exploitation online. Currently 82 countries are signatories, together with 20 technology companies and 24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ommitting to take action and make a difference.
- We are pleas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among its members from the very start and showed particular commitment and leadership. The Republic of Korea reported adopting a number of measures to protect child victims, facilitate prosecution and enhance prevention. I would only mention here as examples: networks to support Children victims of sexual abuse, the use by Korean law enforcement of the Interpol database of images in their investigations and their cooperation with the Virtual Global Taskforce of police worldwide; extensive measures on disqualification of convicted offenders; or the awareness-raising measures for children and familie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se crimes.
- Our efforts are considerable, but they are not sufficient. There are still children being abused and still offenders committing crimes. Therefore, we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is means that the tools currently at the disposal of countries and societies, such as they ones we have described, are not the end point of our work. They are the starting point. We must use them to do more and do it better, for as long as just one child will be at risk of being sexually abused.
- The EU is confident that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like the Republic of Korea, our joint commitment and resolution can make a difference in fighting the scourge of child sexual abuse and in protecting children worldwide.







페르-안데시 수네손 Per-Anders Sunesson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Session 1  
국가별 보고

스웨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변호사이기도 한 페르-안데시 수네손 대사는 지난 20여 년간 스웨덴 및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며, 사회 정책, 형사 정책, 범죄 피해자 문제, 아동 인권, 입법 제도, 복지 제도 부문에 몸담았습니다. 2016년 5월, 그는 스웨덴 정부에 의해 인신매매 척결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 가족 및 사회복지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9년~2012년에는 스웨덴의 모든 의료 기관, 의료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총괄국장으로 재직하였고, 법무부에서 수년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네손 대사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담당하며, 특히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및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허용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20여 년 전부터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 조항을 마련했으며, 법 제도를 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당사자를 처벌하는 대신, 성적 서비스 구매와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 업소를 금지해 왔습니다.

Per-Anders Sunesson, who is a lawyer, has been working both in Sweden and internationally for more than 20 years with social- and criminal policies, crime victims issues, children's rights, legislation and welfare systems. The Swedish government appointed Mr. Sunesson Ambassador at Large for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 in May 2016. Prior to this assignment he upheld a position as Director General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here he was in charge of the Division for Family and Social services. He was between 2009 and 2012 Director for the Department of Supervision of all healthcare institutions, healthcare personnel and social services in Sweden. He has also worked several years at The Ministry of Justice. Ambassador Sunesson's mandate covers all forms of human trafficking but he is asked by his Government to focus o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the nexus between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and allowing prostitution. Sweden prohibited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pimps and brothels almost 20 years ago with a legal framework that, instead of criminalizing the person who is being used in prostitution, includes provisions that obligates the municipalities in Sweden to offer help too those who are in prostitution to leave what they are doing.

## 스웨덴의 성 매수 범죄화와 그 효과

### 서론

- 스웨덴 정부는 오랫동안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을 우선과제로 삼아왔다.
- 사람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이러한 학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적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에 필수적이다.
- 1999년 1월 1일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 성 매수 행위 금지

- 1999년 1월부터 스웨덴에서 성적 서비스의 구매 또는 구매 시도는 형사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성매매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을 대변한다. 성매매는 인간 착취의 한 형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타법에 의해 다른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성적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법 제6장 제11조).
- 거리, 윤락업소, 안마소 등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성적 서비스의 구매는 범죄에 해당된다.
- 대가는 현금일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술이나 마약이 될 수도 있다. 본 조항은 다른 사람에 의해 지급된 성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 법의 원칙

- 위 조항은 모든 성에 해당된다. 즉, 성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
-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는 취약한 자이며, 성 구매자에 의한 착취의 대상이다. 따라서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둘째,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 안 된다.
- 성적 서비스 구매를 금지한다면 성매매와 그 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척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회복지망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매매 감축 노력에 있어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요소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 기소

- 성 매수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 경찰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성적 서비스 구매에 대한 기소 건수가 크게 좌우된다. 2009년에는 기소 건수가 130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400건, 2011년 500건, 2012년 350건, 2013년 270건, 2014년 300건이었다. 가장 흔한 처벌은 벌금형이었다.

## 범죄화의 효과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7월 정부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는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성매매와 성적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있어 중요한 도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 본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의 길거리 성매매는 1999년 법 제정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성과는 성 구매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스웨덴 주변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첫 접촉이 이루어진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에 비해 스웨덴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는 스웨덴 내에서 성 구매가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길거리 성매매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안마소, 성인 클럽, 호텔 등에서의 실내 성매매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기존에는 길거리에서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이 실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 또한 없다.
- 본 조사는 성 매수자에 대한 범죄화가 성매매를 통해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 다른 비슷한 국가에 비해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인신매매 조직이 성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서비스의 구매 금지는 인신매매 업자나 구매자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의하면 성적 목표로 여성을 매매하는 범죄 집단에게 스웨덴은 매력이 없는 시장이다. 그들은 관련법으로 인해 스웨덴 내 인신매매 조직을 구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되는 조직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가 확실히 작다.
- 또한, 조사 보고서는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는 규범적인 효과도 있다고 명시하였다. 성 구매를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성적 서비스 매수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에서는 성 구매 범죄화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70%). 이는 성 구매자들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성적 서비스 구매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되었다. 성적 서비스 구매를 범죄화하게 되면 오히려 이를 음지화시켜 사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성 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신체 학대의 위험을 높이며 그들의 생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 구매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이는 논리적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금지법으로 인해 오히려 성 판매에 대한 사회적 오명이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성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찰의 단속 대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그들의 행동은 용인되지만 그들의 희망이나 선택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생활이 가능하지 못한 사람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 탈 성매매자들은 일관적으로 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전에 성매매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에게 의하면 성적 서비스 구매의 범죄화는 오히려 그들을 보다 강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구매자들이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성매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힘이 있는 쪽은 구매하는 쪽이며 신체를 파는 사람들은 항상 착취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 성매매 현황에 관한 조사

- 스톡홀름시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 of Stockholm)는 2014년 스웨덴에서 성매매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이 조사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의 수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적 서비스의 제공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성적 서비스 구매 범죄화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것(2014년 기준 72%)으로 확인되었다.

### 배경

- 성 구매 금지법은 성매매 근절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현안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성 구매의 범죄화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즉, 성 구매자와 잠재적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 성 구매 금지법은 성매매와 그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성 평등한 사회에서 남성이 일정한 대가를 주고 여성들로부터 성을 구매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스웨덴의 성 구매 금지법 제정은 성적 서비스 구매와 성매매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도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
- 성 구매의 형사 범죄화는 잠재적 성 구매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해외의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이 스웨덴에서 보다 조직적인 성매매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The Swedish criminaliz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d its effects

### Introduction

- The Swedish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given priority to combating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 The underlying reasons for people to be involved in prostitution vary, but the primary factor that maintains both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s the demand for this kind of abuse. Efforts to undermine the market and to counteract the demand for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re therefore fundamental in combating both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 On 1 January 1999, Sweden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introduce legislation criminalising the purchase, but not the sale, of sexual services.

### The prohibition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s

- Since January 1999 purchase of – and attempt to purchase – a sexual service has constituted a criminal offence in Sweden. The provision marks Sweden's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Prostitution is a form of exploitation of human beings and constitute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which is harmful not only to the individual victim of prostitution, but also to society at large.
- *A person who obtains a casual sexual relation in return for payment, shall [if the act does not constitute another sexual crime] be sentenced for purchase of sexual service to a fine or imprisonment for at most one year. (Penal Code Chapter 6, Section 11)*
- The offence comprises all forms of sexual services, whether they are purchased on the street, in brothels or in so-called massage-institutes, etc.

- Payment can of course be money, but may also consist of for example alcohol or drugs. The provision also applies to a person who takes advantage of a sexual service paid for by another person.

### **Principles of the law**

- The legislation is gender-neutral; in other words, both buyers and sellers can be men or women.
- The person who sells sexual services is not punished. There are two reasons for that. First off all,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seller is the weaker part, exploited by the sex buyer.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punish the seller. Secondly, it is important to motivate the persons selling sexual services to seek help to leave prostitution. They should not run the risk of punishment because they have been active selling sex.
- By prohibiting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prostitution and its damaging effects can be counteracted more effectively. The active involvement by social services is pivotal. Criminalisation can never be more than a supplementary element in the efforts to reduce prostitution and cannot be a substitute for broader social exertions.

### **Prosecutions**

- The penalty is a fine or imprisonment for at most one year.
- The number of prosecutions for purchase of a sexual servic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priorities set within the police. In 2009 there were about 130 prosecutions, in 2010 about 400, in 2011 about 500 and in 2012 about 350, in 2013 about 270 and in 2014 about 300. The most common penalty is a fine.



**Effects of the criminalization**

- The prohibition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s has been evaluated and the Inquiry report was presented to the Government in July 2010. The Inquiry concluded that the prohibition has had the intended effect and is an important instrument in preventing and combating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 According to the evaluation, street prostitution in Sweden has been halved since the prohibition was introduced in 1999. This reduction may be considered to be a direct result of the criminalisation of sex purchases.
- Prostitution where the first contact is made via the Internet is more prevalent in Sweden's neighbouring countries.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re has been a greater increase in prostitution via the Internet in Sweden than in these comparable countries. This indicates that the prohibition has not led to street prostitution in Sweden shifting arenas to the Internet.
-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prevalence of indoor prostitution, for example in massage parlours, sex clubs and hotel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Nor is there any information that suggests that women in prostitution formerly exploited on the streets are now involved in indoor prostitution.
- The Inquiry could find no indication that criminalization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people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 The establishment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considered to be substantially less prevalent here than in other comparable countries. The prohibi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seems to act as a barrier to human traffickers and procurers. According to the Police, criminal groups that sell women for sexual purposes view Sweden as a poor market. They choose not to establish here because of the law. The few cases established were of a significantly lower scope than in other countries.

- Furthermore, the Inquiry report stated that prohibiting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lso has had a normative effect. There has been a marked change in attitude to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that coincides with making it a criminal offence to purchase sex. There is now strong support for the prohibition in Sweden (70 percent). The prohibition has proved to act as a deterrent to sex purchasers.
- When the ba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was introduced, various misgivings were voiced. These included fears that criminalization would risk driving prostitution underground, making it harder to reach out to vulnerable persons through social measures, and that the ban would bring an increased risk of physical abuse and generally worsen living conditions for victims of prostitu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these fears have not been realized.
- According to the Inquiry it is clear, and it seems logical, that persons who are currently being exploited in prostitution are critical of the ban. Some of them state that the criminalization has intensified the social stigma of selling sex. Even if it is not forbidden to sell sex, they feel they are hunted by the police. They feel that they are being treated as incapacitated persons because their actions are tolerated but their wishes and choices are not respected.
- Those who have left prostitution are consistently positive to the ban. According to persons previously involved in prostitution criminalization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s has made them stronger. They also point out that the buyers are the ones who entice young people into prostitution, and that there is no voluntary prostitution. The buyer always has the power and the people selling their bodies are always being exploited. However, no one wants to see it that way as long as they are still being exploited.

### **A survey on the prevalence of prostitution**

- The County Administrative Board of Stockholm wa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to carry out a survey on the prevalence and trends in prostitution in Sweden 2014. The survey show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selling or buying sexual services is rather unchanged but the availability of sexual services through internet has increased. The survey also showed that the support for the criminalization of purchase of sexual services remains high (72 percent in year 2014).

### **Background**

- The ba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was introduced since it was deemed that fighting prostitution was of pressing social interest. Criminalisation targeted the demand for sexual services, i.e. purchasers of sex and prospective purchasers of sex.
- The ban was intended to help fight prostitution and its harmful consequences in a more effective manner. The legislative proposal stated that it is shameful and unacceptable that men obtain casual sexual relations with women in return for payment, in a gender equal society.
- By introducing a ban on purchasing sexual services, Sweden also sent an important signal to other countries highlighting our outlook on purchasing sexual services and prostitution.
- It was expected that criminalisation would have a deterrent effect on prospective purchasers of sex and serve to reduce the interest of various groups or individuals abroad in establishing more extensive organised prostitution activities in Sweden.





**사라 챔피언 Sarah Champion**  
 (영국 로더럼 의회 의원, 노동당 국회의원)  
 Member of Parliament for Rotherham (UK)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Session 1  
국가별 보고

영국

2012년에 최초의 로더럼 여성의원으로 당선된 사라 챔피언은 국제적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여성 및 아동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챔피언 의원은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핵심 입법 개혁을 쟁취했습니다.

사회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자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www.sarahchampionmp.com](http://www.sarahchampionmp.com)

[www.dare2care.org.uk](http://www.dare2care.org.uk)

**약력**

- 1996–2008 중국 아트 센터(맨체스터) 대표이사, 현대 예술과 문화를 장려하고 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of England)에 다양성 및 평등 관련 자문 제공
- 2008–2012 블루벨 칠드런스 호스피스 (Bluebell Wood Children’s Hospice, 로더럼)의 대표이사
- 2012 로더럼 의원으로 당선
- 2015–2016 학대가정폭력 방지 그림자 장관(그림자 내무성)
- 2016–2017 여성평등 그림자 장관
- 2018 초당적의원단체(APPGs) 소속:  
아동을 위한 초당적의원단체 및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를 위한 초당적의원단체 부의장  
가정 폭력 초당적의원단체 및 성매매/국제 성거래 초당적의원단체의 의원

**주요 성과**

챔피언 의원은 2012년에 당선된 직후 보고서를 통해 로더럼 내 조직적인 아동 성착취를 폭로(1997–2013년간 아동 피해자 1400명). 그 후, 아동 학대 인식 제고, 피해자 지원책, 조기 파악 훈련, 방지책 구축 캠페인 시작.

- 2014 영국 내 아동 성착취 근절법의 효과에 관한 초당적 연구 주도. 입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법 수정 및 강화.
- 2014 동일 임금에 관한 10분 규칙 법안(10-Minute Rule Bill)으로, 대기업에서 성 임금 투명성 확보.
- 2016 데이투케어(Dare2Care) 캠페인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이행하여, 아동 학대 방지 및 청년 이성 교제 시 발생하는 폭력 정상화 추구
- 2017 2017년 발효된 연령별 의무 성교육 및 이성 교제 교육 도입을 위해 투쟁
- 2018 성공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아동 학대에 관한 유럽의회 란사르테 협약을 비준하는 데에 기여

Elected in 2012 as the first female MP for Rotherham, Sarah is committed to eradicating child abuse and promoting women's and child rights globally. Sarah has secured key legislative reforms in the UK to help keep children safe.

Speaking truth to power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www.sarahchampionmp.com](http://www.sarahchampionmp.com)

[www.dare2care.org.uk](http://www.dare2care.org.uk)

### Career History

- 1996-2008 CEO of the Chinese Arts Centre (Manchester), promoting contemporary arts and culture and advising the Arts Council of England on diversity & equality.
- 2008-2012 Chief Executive of Bluebell Wood Children's Hospice (Rotherham).
- 2012 Elected as MP for Rotherham
- 2015-2016 Shadow Minister for Preventing Abuse & Domestic Violence (Shadow Home Office)
- 2016-2017 Shadow Secretary of State for Women & Equalities
- 2018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s (APPGs):  
Vice-Chair of APPG for Children and APPG Human Trafficking & Modern Slavery.  
Officer of APPG Domestic Violence and APPG Prostitution & Global Sex Trade

### Key Achievements

Shortly after Sarah was elected in 2012, reports emerged of organise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Rotherham (1400 children 1997-2013). From that point, Sarah has campaigned for greater recognition of child abuse,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survivors, training in early-detection as well as building prevention strategies.

- 2014 Chaired cross-party inquiry into the effectiveness of UK legislation in tack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Brought legislative changes on grooming and strengthened child protection laws.
- 2014 10-Minute Rule Bill on Equal Pay forcing the government to enact mandatory pay audit legislation, which ensures gender pay transparency in large companies.
- 2016 Launched National Action Plan for Dare2Care campaign, to prevent child abuse and challenge the normalisation of violence in young people's relationships.
- 2017 Campaigned to introduce statutory age-appropriate 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in schools; enacted in 2017.
- 2018 Successfully lobbied the government to ratify the Council of Europe's Lanzarote Convention on child abuse.

##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연설문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서 제가 영국에서 경험한 아동 보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년간 영국 요크셔 주의 작은 산업도시 로더럼(Rotherham)이라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로더럼은 소도시로, 예전에는 주로 철강 생산과 석탄 광산업에 종사해왔으나 현재는 두 산업이 모두 대폭 축소되면서 대량 실업과 가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될 당시 저는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학대의 실상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8월, 현지 시의회가 자금을 지원한 조사를 통해 1997~2013년 사이에 적어도 1,400명의 아동이 조직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로더럼 아동 학대 스캔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착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임을 여러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동 성착취에 대해 말할 때는 법률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에 따른 아동의 기준인 18세 미만<sup>1)</sup>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age of consent)은 16세이지만, 16~18세 사이의 아동이 당하는 성학대는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착취나 강간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교 동의 연령을 더 낮출 경우 당연히 위험은 더 커집니다. 여기서 성착취는 아동의 취약성 - 학습 장애, 경제적 어려움,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 등 - 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동을 착취하는 강압, 위협, 조종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본 발제문에서의 연령은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제 경험으로 학대는 언제나 힘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성착취의 경우 이러한 힘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형태, 또는 일자리나 집 또는 친구 집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폭력, 위협, 협박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갈취 또는 학대의 정도를 점차 높이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아동 성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또래 학대(peer on peer abuse)가 영국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또래 학대란 14살짜리 두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4세 아동이 다른 14세 아동을 조종, 위협 또는 강요하여 자기들과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로터럼의 경우 아동 학대는 남성 갱단에 의해 조직화되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모방되고 있는 이 패턴은 이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동 성착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수잔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당시 12세였던 수잔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17세 남자아이가 접근했습니다. 수잔은 남자아이가 관심을 보이자 우쭐했고 그 아이를 남자친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잔에게 선물도 주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으며,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남자아이는 핸드폰으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 자기를 좋아한다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잔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난감함에 눈물을 보이자 그는 수잔에게 애처럼 군다며 더 나이든 여자친구를 만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잔은 어쩔 수 없이 그와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잔은 그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영상을 보여주자 당황한 수잔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영상을 지우기는커녕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수잔에게 그들과도 같이 자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겁이 난 수잔은 그의 친구들과도 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수잔은 로터럼의 여러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성인들이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반 무의식 상태가 되도록 약물과 알코올을 먹였고 반항하면 두들겨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잘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쩌다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웃으며 자신을 사



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는 수잔이 갑자기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항상 밝고 인기 있는 아이였지만 학교 성적이 푹 떨어지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고 몇 시간이고 나가서는 소식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그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경찰은 그 나이에 다 겪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고, 결국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경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현지 당국이 운영하는 아동 보호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수잔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잔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수잔의 부모에게 수잔이 성인은 아니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이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적 취향을 탐험하는 중이므로 그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잔의 아버지가 수잔의 뒤를 밟았고 수잔이 들어간 집 안으로 일단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잔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말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때서야 수잔은 무너지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잔과 아버지는 경찰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잔의 아버지는 그 남자들이 아동학대로 고발되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수잔의 증언만으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조사도 하기 전에 기각되었습니다.

16세 생일 직전, 수잔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딸을 잘못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는 당장 분리되었고, 수잔은 지방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 상태에서도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24시간 수잔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4년 동안 수잔은 인신매매되어 영국 전역에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성병에 걸린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았지만 이들은 학대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아동 성착취의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는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잔을 비롯한 1,400명의 여자아이들, 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하고 이제는 성인이 된 이 여성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범죄는 영국 전역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야 그 경고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기소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국에는 학대를 당할만한 짓을 했다며 여전히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어른처럼 군다거나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범행을 자초한다는 비난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대 가해자를 자신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어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이 남자친구라고 믿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이 피해자들이 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아동으로서 분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 보호에 관한 한 회색 지대나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동은 많은 경우, 강요에 의해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잔이 동영상이 퍼질까봐 겁을 냈던 것처럼 피해자들은 자신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에 저는 아동 성착취 문제 해결에 있어 영국 법률의 효과를 따져보는 초당적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2014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아동 보호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여러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한 가지 권고안은 ‘그루밍(grooming)’에 대한 법률을 변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이란 아동과의 부적절한 소통 과정을 뜻하며, 성적인 특성을 보이고 학대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기 위한 선행 작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법률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만남을 적어도 두 번은 가져야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의 개정을 권고했고 오랜 캠페인 후에 드디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형사 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2015)에 대한 개정안을 수용하여,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한 번이라도 접근

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일반 대중에게 그루밍이라는 아동 성착취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러한 범죄를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또 다른 주요 권고안은 모든 법안에서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동은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입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용어는 착취와 학대라는 용어뿐입니다.

‘성매매’(prostitution)라는 용어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 따라서 아동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법적 용어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용되어 피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진술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용어를 바꾸자는 저의 캠페인은 2015년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2015)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1959)도 개정되어, 거리에서 상업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처벌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은 언제나 피해자이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절대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개정이었습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공 사례는 영국의 사법 제도가 피해자와 증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이제 지정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판사들은 관련 사건을 민감하게 처리하며, 증인에게 공정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개정된 지침을 제공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학대를 당한 아동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장한 혐의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압력을 받은 후에야 정부는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표준화하기 위한 개혁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성학대 범죄 조사를 위한 기술을 입증하고 필수 연수를 수료한 경찰들에게 라이선스를 수여하는 시범 제

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로더럼 사례를 통해 피해자를 진지하게 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공감할 수 있는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은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즉 피해자를 해치고 별주거나 위협하여 복종하게 만들 때 사용되는 행위 또는 행위의 패턴을 범죄로 정의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적 행동은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격리시키고 착취하며, 독립성을 빼앗는 방식으로 종속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개정된 법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과 여아를 상대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변화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 성착취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는 정확히 말해 이러한 강압적 통제, 즉 보복이나 폭력이 두려워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행동하도록 강요받는 여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종식시키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기준의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영국 정부가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란사로테 협약(Lanzarote Convention)을 비준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협약에는 아동 성착취, 그루밍 및 아동 학대물 관련 범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영국 정부는 이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로 이들을 기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들이 성범죄자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협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도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역외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조항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집행되고 범법자들이 기소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등 4개 행정구역(constituent nation) 각각에 아동 책임관(Children's Commissioners)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 책임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및 기타 국내 관련법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005년에 도입된 이 아동 책임관은 아동을 위한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아동 복지 촉진을 위한 최상의 방법에 관해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인터넷의 출현은 아동에게 새로운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술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즉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모든 사용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와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성인을 막론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은 2017년 12월에 단 한 주 동안 인터넷상에서 245명의 아동을 보호했고, 192명의 범죄 혐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범죄청과 경찰은 범죄자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신속성이 가져다주는 취약점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대 가해자들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수백 명의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중에 하나라도 대화로 피어낼 속셈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루밍 과정이 시작됩니다. 알랑거리고 부추기고 온라인 선물을 보내 성적 행동을 하도록 아동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제 더 어두운 단계로 들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가장 섬뜩한 것은 아동을 직접 만나 학대하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나 채팅 앱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점차 이처럼 제한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 무한정 접근할 수 있게 된 아동들은 온라인 그루밍에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가 디지털 이전 시대에 성장하여 자녀들이 당면한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72%가 11세 또는 1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을 갖게 되며, 하루에 약 5.4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의 9세 미만 아동도 6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와 같은 기술의 보편화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뒤처져있지만, 영국의 9~16세 아동 중 절반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가 현관문을 열고 모르는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모님들께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아동 성착취의 95% 이상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3건꼴로 신고

된 총 5,104건의 아동 성학대 사건 중 94.1%가 13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학대를 당했지만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치를 당한 13~18세 사이의 아동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는 최근 [y]에서 [x]로 불리는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끔찍함을 느꼈습니다. X는 나이로나 지적장애라는 면에서나 내재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동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X는 채팅 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촉한 6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법원은 이들 성인을 기소하는 대신 학대자들이 폭력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아동을 ‘자발적 성매매 아동’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X가 자발적으로 채팅 앱에 계좌를 만들고 이들 남성으로부터 음식과 모텔 숙박료를 받았다는 주장에서였습니다.

이것은 ‘아동 성매매’나 ‘원조 교제’ 사건이 아니라 아동 성착취의 교과서적 사례이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그렇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성에 관한 것이나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이라면, 아동이 온라인에서 찾은 내용을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사전에 갖추지 못했을 경우 더 큰 위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특히 취약한 그룹이 성소수자(LGBT) 아동들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2012년 연구에서는 게이 청소년 4명 중 1명이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어른이 없으며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학대 가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이용합니다.

저는 영국 정부가 우리 아동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아동이 무심코 성인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연령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성인물 웹사이트가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모든 이용자의 연령을 검증하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웹사이트에 책임을 묻는 일을 담당하는 영국 영화 등급분류위원회(BBFC)는 성인물 웹사이트에서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ID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통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의

회에 상정된 「공격용 무기 법안(Offensive Weapons Bill)」은 먼저 구매자의 연령을 검증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무기를 판매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연령 검증을 생략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온라인 착취에 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는 안 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과 법원 및 기타 담당 기관의 대응 방법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인용 앱에 아동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2018년 6월에 영국 정부는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아동 성착취 등, 다양한 온라인 피해를 다루는 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아동과 부모, 교사,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데어투케어(Dare2Care)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십대들의 관계에서 아동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권고안 및 공유 자원입니다. 2016년 시작된 Dare2Care는 영국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Dare2Care는 또한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인 관계 교육(Relationships Education)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안을 2020년에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학대의 패턴을 인식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Dare2Care는 아동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개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의 개정은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문화적 자세의 전환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기금 증가, 전국 차원의 범죄 노출, 유죄 판결, 아동을 대하는 모든 직업군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경찰과 사법부의 대응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취약점과 무력감을 이용하여 통제력을 극대화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한국에서 ‘성매매 아동’으로 간주된 아이들의 80% 이상이 가출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년 가출 또는 실종 아동 중 생존의 갈림길에서 아동 성착취로 몰리는 아동의 수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진정으로 아동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줄임으로써 애초에 이런 위기 상황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가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간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에서 개입한다면 이러한 조치들로 학대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우리는 사회가 만들고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빠지기 쉬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심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의 소비주의라는 또 다른 복잡성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원조 교제’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증가는 ‘조건 만남’과 아울러 성착취와 대규모로 진행되는 여성 신체의 상품화를 정당한 것처럼 만듭니다. 조건 만남에 관여한 아동의 87.9%가 대가로 돈을 받았고 39.3%는 원하는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동이 사전 동의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표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중 84.4%의 아동은 가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여아들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매매 아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선물은 착취의 증거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한국에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성인물 동영상 이용률,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피해자 재활 및 지원 부족(특히 남아와 남성을 위한), 아동 성착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방 전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축소.’*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연령은 모두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가리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모든 법률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이지만 그 이전에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형법 제305조에 13세로 명시된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 성착취의 가해자를 변호하는 데 흔히 사용되어 13~18세 사이의 어린이를 성적 행위에 동의한 당



사자로 그려냅니다. 이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자는 청원이 2012년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 동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것은 영국 법에서의 기준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의 연령을 18세로 올린다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연령과 성교 동의 연령의 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태도, 첫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 집행 단계에서의 사법부 등 모든 단계에서 아동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단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낮은 신고율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가해자, 범법자를 법정으로 끌어낼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학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표현과 용어 선택을 검토하고, 아동을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대신 피해 아동을 피해자라는 렌즈를 통해 대함으로써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한국이 담당하는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내법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헌법 제6(1)조, 1991년에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2004년에 비준된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2000)와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와 온라인 그루밍이 조장되는 앱과 온라인 공간을 규제합니다. 아직 분명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앱의 차단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NGO인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채팅방 제목에 ‘성교(sexual intercourse)’와 관련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앱들이 유해한 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대부분이 규제를 빠져나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앱과 웹사이트를 규제하고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아동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동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담 정부 기구의 부재로 정책은 단편적으로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과 일관성 있는 추진력 없이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발전은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아동 권리 전담 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 권리 옴부즈만의 성과를 평가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많은 아동에게 내재한 취약점을 찾아내 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육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 성착취의 위험에 대해 가르치고 교육 제도, 또래 집단의 압력,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취약한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권고와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의(consent)’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아들의 원치 않는 임신 건수를 낮추기 위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관계와 성교육 프로그램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쟁이 심한 교육 제도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 괴롭힘,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학교 밖으로까지 이어지기 쉬우며, 다른 곳에서의 착취도 정당화하게 됩니다. 학교는 문제의 근원지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관계,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 또래 집단의 압력과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관계 및 성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건전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와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한국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어진 이유가 대체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르침 때문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동 양육이 국가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극도의 위기로 치달을 때까지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태가 드러난 지금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법적 규제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개입의 정당성은 다음 세대와 이 아동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영국의 경우 아동 학대의 약 90%는 가족 및 친지에 의해 발생하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이나 울타리를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가장 소중한 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넘지 못할 만큼 높은 울타리는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울타리를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고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닌, 그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속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과 사회적 인식에 있어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 자료〉

### 차례

#### 1. 영국 의회의 아동 성 학대(Child Sexual Abuse: CSA) 관련 입법 연혁

- 1) 영국의 아동성학대 관련 법 (1989-현재)
- 2) 아동성학대 관련 협약 비준 (영국)
- 3) 영국 법상 및 행정 지침 및 정책 (2013-현재)

#### 2. 영국 아동 성 학대 관련 법 일별

- 1) 성범죄법 (2003)
- 2) 중범죄법 (2015)
- 3) 형사사법과 법원에 관한 법 (2015)

## 1. 영국 의회의 아동 성 학대 관련 입법 연혁

### 1) 영국 아동성학대 관련 법안 (1989 - 현재)<sup>1)</sup>

- 1989 **아동법** - 아동 복지의 성격 및 아동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비롯한 아동 보호의 입법적 체계의 개괄적 규율.
- 1997 **성범죄자법** - 일련의 감독 및 보고 의무를 통한 성범죄자 알림 체계를 설립.
- 2003 **성범죄법** - 아동에 대한 그루밍, 위력, 통제 등 다양한 성범죄 형태 규정. (별첨 보고서 참조)
- 2003 **형사사법법** - 성 범죄자나 강력범에 의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공중 보호 체계(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s)’를 설립.
- 2004 **아동법** - 아동 보호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여 1989년 아동법을 강화. 아동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방법에 관한 정부 권고 제시 위해 아동 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기구 도입. 아동 사망 및 중대 사건 검토를 위해 ‘지역 아동 보호 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를 설립.
- 2006 **취약집단보호법** - 아동과 근로가 금지된 개인선정 및 금지개인 목록 보관 위한 ‘청소년 안전 보호국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 ISA)’ 설립.
- 2015 **형사사법과 법원에 관한 법** - 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할 고의로 사적인 성적 사진이나 필름을 공개하는 범죄를 규정, 그루밍에 관한 법을 개정. (별첨 보고서 참조)
- 2015 **중범죄법** - 취약아동 및 기타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특수 조항을 제정,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 표현을 법에서 전부 삭제. (별첨 보고서 참조)
- 2015 **현대판 노예제법** -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영국 국내·외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관계된 범죄를 규정.
- 2017 **아동 및 사회복지법** -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관계교육, 중등 및 고등학생들에게 관계교육 및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모든 학교에

1) 각 조항에 따라 각 법의 지리적 적용범위 상이함.

서 의무적으로 개인, 사회, 보건 및 경제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 2017 **디지털경제법**– 인터넷 외설물 공급자들에게 18세 이하 자료접근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벌금 부과. 관련 지침 발간을 위한 연령 확인 기관 지정. 추가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국 내 극단적 외설물을 제작하는 온라인 플랫폼 접근 차단 의무 부과.

## 2) 아동성학대 관련 협약 비준(영국)

- 2018 **성 착취 및 성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평의회 협약 (란사로테 협약)** – 영국 정부는 아동 성 학대의 초국경적 성격을 인식하고, 아동 성 범죄자 기소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중요성을 인정.

## 3) 영국 법상 및 행정 지침 및 정책 (2013– 현재)

- 2013 **‘아동 성 학대 사건 기소 지침’ (영국 검찰청)<sup>2)</sup>**– 아동 성 학대 관련 사건의 기소를 위한 접근 방법, 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 식별 방법, 증인의 신빙성이 아니라 아동 성 학대 주장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 2015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아동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안내’ (영국 정부)<sup>3)</sup>** –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지역 아동 보호 위원회’의 기관적 책임과 기능에 관한 안내’
- 2016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끝내기 전략 (2016–2020)’ (내무부)<sup>4)</sup>** – 위기 대응에서 조기 개입 및 예방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을 개괄. 폭력 및 학대

2) 검찰청, ‘아동 성 학대: 아동 성 학대 사건 기소에 관한 지침’ (17 October 2013년 10월 17일 발간, 2017년 7월 26일 수정).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cps.gov.uk/legal-guidance/child-sexual-abuse-guidelines-prosecuting-cases-child-sexual-abuse](http://www.cps.gov.uk/legal-guidance/child-sexual-abuse-guidelines-prosecuting-cases-child-sexual-abuse)〉 최종 접근 2018년 8월.

3) 영국 정부 교육부(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법상 지침, 2015, 3월 26일).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 2018년 8월 최종 접근. 주의: 잉글랜드에만 적용됨.

4) 영국 정부 내무부(Home Office),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끝내기 전략: 2016–2020’ (정책서, 2016년 3월 8일).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rategy-to-e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2016-to-2020](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rategy-to-e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2016-to-2020)〉 2018년 8월 최종 접근.

예방과 온라인 학대 및 착취 예방,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협력 및 가해자 기소 등에 대한 실행 계획 제시.

- 2017 ‘학교와 대학에서의 아동 간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부)<sup>5)</sup> -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정의와 실제 사건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관한 학교 및 대학 대상 지침.
- 2018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아동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안내’ (영국 정부)<sup>6)</sup> -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다룰 때 아동 및 가족 지원 기관의 의뢰 체계, 정책 강화 및 조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개정 지침. 전술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명칭이 ‘보호 파트너’로 대체.

## 2. 영국 아동 성 학대 관련 법 일별

### 1) 성범죄법 (2003)

성범죄, 특히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여론수렴절차 및 정부 검토에 따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SOA)이 2003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만 전 조항이 적용되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2009년과 2008년에 동일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법적 성과는 사회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아동 성 학대의 범위에 대한 제고된 인식, 기존 성범죄 관련법은 규율하지 못했던 학대 및 착취의 여러 형태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sup>7)</sup>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그루밍, 위력, 통제에 관한 조항

5) 영국 정부 교육부(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학교와 대학에서의 아동 간 성 폭력 및 성 희롱 (지침, 2017년 12월 14일).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xual-violence-and-sexual-harassment-between-children-in-schools-and-colleges](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xual-violence-and-sexual-harassment-between-children-in-schools-and-colleges)〉 2018년 8월 최종 접근. 주의: 잉글랜드에만 적용됨.

6) 영국 정부 교육부(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법상 지침, 2018, 7월).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 2018년 8월 최종 접근. 주의: 잉글랜드에만 적용됨.

7) 성범죄법 (2003)의 정책배경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 참조,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 ‘성 범죄 법안 (HL): 정책 배경’ (연구논문 03/61, 2003년 7월 10일)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03-61/RP03-61.pdf](http://www.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03-61/RP03-61.pdf)〉 2018년 8월 최종 접근.

을 포함하며, 강간에 관한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동의에 대한 규정과 성 범죄자 관리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다.

### 아동 성 범죄의 범주<sup>8)</sup>

#### 13세 미만 아동

-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동의나 아동의 나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처벌된다.’
- 범죄는 다음과 같다. 강간, 삽입에 의한 폭행,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으로 하여금 또는 조장하여 성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 범죄의 최고 법정형은 범죄에 따라 최대 종신형 또는 14년 징역형이다.

#### 16세 미만 아동

- ‘아동이 성 행위에 동의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나 13세 미만의 아동 관련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고 원고가 믿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범죄는 다음과 같다. 아동과의 성 행위, 아동으로 하여금 또는 조장하여 성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성 행위를 하는 것, 아동으로 하여금 성 행위를 보도록 하는 것, 아동 성 범죄 행위에 대한 모의나 조력 하는 것, 성적 그루밍 후에 아동을 만나는 것.
- 최단기형 10년 내지 14년이 선고된다.
  - 범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최고 법정형은 5년 징역형이다.
  -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의 나이에 관한 원고의 인식과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 18세 미만 아동

- 이 법 상의 수개 성범죄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신뢰 받는 지위의 남용 및 가족 내 아동 성 범죄가 포함된다.

8) 정책대학(College of Policing), ‘주요 조사 및 공중 보호: 아동 성 착취’ (안내서)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and-public-protection/child-sexual-exploitation/#legislation-and-the-law](http://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and-public-protection/child-sexual-exploitation/#legislation-and-the-law) 2018년 8월 최종 접근.



## 2) 중범죄법 (2015)

중범죄법 (2015)은 중범죄 및 조직적 범죄에 관련된 수개의 법들을 개정하였고, 취약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구체적인 조항을 도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범죄법 제5장 ‘아동 보호’를 주로 검토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특히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주요 변화

- 아동 및 청소년 법 (1993)에 명시된 ‘아동에 대한 잔혹 행위’의 범죄에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잔혹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잔혹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
- 성범죄법 (2003)에 있는 시대착오적 단어인 ‘아동 매춘(prostitution)’과 ‘아동 포르노’를 모두 수정(제68조). 수정 전 표현은 마치 아동이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준 것을 암시했다.

### ‘아동 매춘’과 ‘아동 포르노’를 지칭하는 어휘 제거

2012년 잉글랜드 아동 위원회는 아동을 매춘부(prostitute)로 지칭하거나 아동이 매춘(prostitution)과 관련되었음을 암시하는 모든 법률과 지침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사라 챔피언(의원)이 의장으로 주재한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의회 심문이 2014년 4월 열렸다. 여기서도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었는데, 용어들이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다.’<sup>9)</sup>

9) 내무부, ‘중범죄 법 자료표: 아동 성 착취’ (자료표, 2015년 3월)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040/Fact\\_sheet\\_-\\_Child\\_sexual\\_exploitation\\_-\\_Act.pdf](http://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040/Fact_sheet_-_Child_sexual_exploitation_-_Act.pdf)> 2018년 8월 최종 접근.

중범죄법 (2015)의 제68조 성범죄법 (2003)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아동 매춘부,’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를 지칭하는 어휘들을 제거하고 아동 성 착취를 지칭하는 어휘로 대체하였다.

이 조항은 또한 거리 범죄 법 (1959)의 제1조를 수정하여 성매매(prostitution)를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호객하는 행위를 18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거리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범죄행위에서 제외한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의 아동을 동의한 참여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18세 미만 아동과의 성매수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sup>10)</sup>

### 3) 형사사법 및 형사법원법 (2015)

시민운동 진영과 의회에서 제기된 ‘리벤지 포르노’와 ‘성적 그루밍’에 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러한 행위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범죄 유형을 입법하였다.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은밀한 성적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sup>11)</sup>

#### ‘리벤지 포르노’ (제33조)

제33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의로 개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동의 없이 사적인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새롭게 정의된 이 범죄는 최대 2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 ‘공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범죄는 모든 종류의 사적인 성적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공개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 문자나 이메일로 공유하는 것, 누군가에게 실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0) 중범죄 법(Serious Crime Act (2015)), ‘설명서: 제68조 아동 성 착취’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legislation.gov.uk/ukpga/2015/9/notes/division/3/5/2/3](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9/notes/division/3/5/2/3)> 2018년 8월 최종 접근.

11) 검찰청, ‘리벤지 포르노: 사적인 성적 사진 및 필름을 누설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 지침’ (2017년 1월 개정)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cps.gov.uk/legal-guidance/vengeance-pornography-guidelines-prosecuting-offence-disclosing-private-sexual](http://www.cps.gov.uk/legal-guidance/vengeance-pornography-guidelines-prosecuting-offence-disclosing-private-sexual)> 2018년 8월 최종 접근.

이 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며, 전자적 수단 또는 전통적 방식으로 공유된 이미지에 모두 적용된다.’<sup>12)</sup>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은 ‘사적’이고 ‘성적’이어야 한다.

### ‘성적 그루밍’ (제36조)

동 조항은 성적 그루밍 이후 아동을 만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법 (2003)의 제15조를 개정하여, 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고가 해당 피해 아동을 만나거나 소통해야 하는 횟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 소통이나 만남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고의로 만나거나, 만남을 준비하거나, 만남을 목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거나, 또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만날 목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어떠한 만남 동안 또는 그 후에 피해 아동에게, 또는 피해 아동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sup>13)</sup>

12) 상계서

13) 영국 정부 사법부(HM Ministry of Justice), ‘형법사법 및 형법법원 법 2015’ (2015/01 회람, 23 March 2015년 3월 23일) 다음 출처에서 인용:

〈[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8204/cjc-act-circular.pdf](http://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8204/cjc-act-circular.pdf)〉 2018년 8월 최종 접근.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arah Champion (MP) Speech

An-yong-ha-say-yo (hello)

It is a great honour for me to be here today and share my experience of child protection in the UK.

I have been a member of the British Parliament for five years. I represent an industrial town called Rotherham which is in Yorkshire, the North East of England. It is a small town. Historically, employment was in steel production and coal mining. Both of those industries are now greatly reduced, leaving large scale unemployment and poverty.

When I was elected in November 2012, I had never heard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which I will now refer to as CSE). That changed within a few months of my appointment when I gradually discovered the scale of child abuse going on in our town. By August 2014, the whole world had heard of the Rotherham child abuse scandal as an investigation, funded by the local town council, uncovered organised abuse of at least 1400 children between 1997-2013. This exploitation is still going on, and I have evidence showing it goes back to the early 1960's.

When I talk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in the UK, I mean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hich is the legal, and the UNCRC, definition of a child. In the UK, the age of consent is 16 but I hope to explain to you why the sexual abuse suffered by children between 16-18 years cannot be considered consensual and should be viewed as exploitation or rape. The risks are of course increased when the age of consent is lower. By sexual exploitation, I am referring to the coercion, intimidation, manipulation or the abuse of a person's vulnerabilities; such as learning difficulties, economic hardship, drug and alcohol addictions or their mental health issues being

exploited in order to obtain sexual acts from a child.

In my experience, abuse is always about a power imbalance that is capitalised on. In the case of sexual exploitation, that power can take the form of violence, intimidation, the threat to harm others or denying access to work, housing or friendship groups. Blackmail and incremental escalation of abuse are also frequently used.

Child sexual exploitation takes on many forms with peer on peer abuse currently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40% of the cases reported to the UK police. Let me be clear when I say peer on peer abuse, I am not talking about two 14 year olds having sex. I am talking about a 14-year-old manipulating, intimidating or coercing another 14 year old to have sex with them. The victim cannot give informed consent due to the power imbalance.

In the case of Rotherham, the child abuse was organised by gangs of men and followed a now well recognised pattern that we see replicated across the UK.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Susan, which will highlight the escalat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Susan was approached at the age of 12 by a 17-year-old boy from her school. Susan was flattered by the attention and started to consider the boy to be her boyfriend. He brought her presents, kept saying how pretty she was, met her at the park and encouraged her to start smoking. The boy showed Susan pornography on his phone. He persuaded Susan that if she loved him, she would do the things they were seeing in the videos. Susan didn't want to, she started crying and the boy said she was a baby and he would get an older girlfriend. In desperation, Susan had sex with him.

Susan didn't know at the time that he had filmed them having sex. When he showed it to her, she was embarrassed and asked him to delete it. He wouldn't, instead he showed it to his friends and demanded that Susan have sex with them too, or he would put the video on the internet.

Terrified of what her parents would think, Susan had sex with his friends. At that point things escalated quickly. Susan would be taken to different houses in Rotherham where adults she didn't know would rape her. Susan would be given drugs and alcohol to keep her in a state of semi-consciousness. If she protested, she would be beaten. Her boyfriend was rarely around. When she saw him, she begged him to help her. He would just laugh and say she should do it to show that she loved him.

Her parents were aware of the dramatic changes in Susan. Always a bright and popular girl, her grades at school plummeted and she stopped seeing her friends. Rather than being home on time, Susan would be missing for hours. When her parents tried to talk to her about it, she would become incredibly angry and run away from home. Each time her parents reported her missing to the police, the police would say it was just a phase she was going through and, as long as she eventually came home—it was not a police matter. Susan's parents called the child protection team run by the local Authority. The social workers came and spoke to Susan. Susan was now 13. The social workers told Susan's parents that, whilst not an adult, Susan was old enough to make her own choices and they should not be concerned that she was exploring her sexuality in a consensual relationship.

Susan's Dad started to follow her. He saw a parade of men going into the house he had followed Susan to. When she got home, he demand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Susan broke down and told him the whole story. Susan and her Dad went to the police and gave a statement. The police officer said that if she hung around with the wrong people she had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Even though Susan's Dad wanted the men to be charged with child abuse, the officer said it was Susan's word against theirs, so there was no point. The case was dropped before any investigation was done.

Just before her sixteenth birthday, Susan gave birth. Susan's parents were blamed for their poor parenting. The child was immediately taken away and Susan was put into local Authority care. In care, the abusers had 24-hour

access to Susan. She was trafficked and sexually exploited across the UK for the next four years. Three times she tried to kill herself, she can't remember how many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he has had. But for each one, she was seen by a health professional, who did nothing to prevent the abuse.

It has taken nearly twenty years for Susan to be seen as a victim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We are still fighting to get justice for her, and the 1400 other girls, now women, survivors of this vile crime. These crimes continue across the country and whilst the UK is slowly starting to recognise the warning signs, not enough is being done to prevent or prosecute.

There are some in the UK who still blame the children for their own abuse. Child victims are still accused of encouraging the attacks through their revealing dress, their adult behaviour or because they mix with the wrong people. They are called prostitutes. Often the victims will genuinely believe their abuser is their boyfriend, not someone recruiting them for exploitation. Let me be clear, these victims are children. They should be fully protected as such under the law. There should be no grey areas, and no mitigating circumstances, when it comes to protecting children.

Often children can be coerced into having sex as they perceive the alternatives to be far worse. As in the case of Susan and her fear of sharing the video, victims often believe they have consented and so won't report the crime, or worse, fear they will be blamed.

In November 2013, I chaired a cross party inquiry into the effectiveness of UK legislation in tack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The report, published in April 2014,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that the Government subsequently adopted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e major recommendation of the report was to change the law on grooming. In common parlance, grooming is the process of in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a child, often sexual in nature, which is frequently the precursor to

meeting a child for the purposes of abuse. An oddity in the original legislation meant that an adult arranging to meet a child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had to arrange this meeting on two occasions before it was deemed a crime- one time too many for child protection!

I recommended the law be changed and, after a long campaign, I was successful. The Government accepted my amendment to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so that Police could intervene the first time an adult contacts a child with the intention of meeting them for sex. This change sent out a clear message to the general public that child sexual exploitation existed, and gave the necessary powers to the police to swiftly prevent it.

Another key recommendation of our report was for the removal of the term 'child prostitution' from all legislation. This is important as children should never be seen as prostitutes, they are victims. No child is able to make an informed choice about selling their bodies for sex, the only rhetoric we should be using is that of exploitation and abuse.

The term 'prostitution' implies complicity on the part of the child. As it was a legal definition, it could be used in court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 as well as humiliate them and ultimately influence the jury's opinion of the child's claims. My campaign to change the language was successful in 2015. The Serious Crime Act

(2015) amended primary legislation to remove the term 'child prostitution.' It also amended the Street Offences Act (1959) to decriminalise under-18s who are being commercially sexually exploited on the streets. This is crucial as it recognises that children are always victims and are never consenting participants in selling sex.

Another key success was changing the way our judicial system treats victims and witnesses. Judges oversee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cases must now complete specific training - this ensures they deal with cases sensitively and



give witnesses a fair hearing. The Government also agreed to provide updated guidance to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so there is a shift from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a child who has been abused, to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the allegation they make.

In addition, after significant pressure,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reforms aimed at standardising police responses to CSE cases, including a trial scheme which confers a licence upon selected officers who have exhibited the skillset and undertaken the necessary training to investigate child sex abuse claims. We know from Rotherham that victims need to be taken seriously and supported, and a welltrained and empathic police force is essential to th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legal change was the criminalisation of coercive control, an act or pattern of acts, used to harm, punish, or frighten the victim into submission. This controlling behaviour is designed to make a person dependent by isolating them from support, exploiting them, and/or depriving them of their independence. This came into force in 2015 and has proven fundamental to shifting attitudes on the various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hen we talk about child sexual exploitation, it is exactly this- coercive control- girls forced to act against their will for fear of reprisals, or violence.

It is a key part of the UNCRC and Council of Europe standards to end all kinds of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I have been campaigning for the UK Government to ratify the Lanzarot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This includes child sexual exploitation, grooming and offences related to child abuse material. In June of this year, they did. This is vital because it promotes legislation that obliges states to prosecute their own nationals for sex offences they have committed abroad. It also means that states must cooperate on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sex offenders. I understand that South Korea also ha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provisions in place for sexual offences committed abroad, and would urge the government to ensure these are

proactively enforced and perpetrators prosecuted.

The UK has Children's Commissioners in each of its constituent nations. The Commissioner holds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children's righ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nd other domestic human rights legislation. Introduced in 2005, the Children's Commissioner acts as a national voice for children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n how to best promote children's welfare. They work independently from the government, though are funded by them.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brought new risks to our children.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technology mean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instantly connect through social media. Though this does not necessarily pose a threat to all users, it has opened up a largely unregulated space which is capable of enabling widespread abuse of vulnerable individuals; children and adults alike.

In the UK, the National Crime Agency said in just one week in December 2017, they safeguarded 245 children online and arrested 192 suspected offenders. The National Crime Agency and Police have said that offenders capitalise on vulnerabilities brought by the immediacy of live streaming. Abusers send messages to literally hundreds of children at a time, hoping to lure one into a conversation. The grooming process then begins: flattery, dares, and online gifts – persuading and manipulating the child to perform sexual acts. Then the relationship takes a darker turn: threats to reveal images or videos to parents and friends and, most chillingly, meeting them to abuse them in person.

Children increasingly have unlimited access to these unrestricted online spaces-coupled with a lack of awareness and education of the dangers of social media/chat apps, leaving them vulnerable to online grooming. This is largely because the majority of parents grew-up in the pre-digital age and so are unaware of the risks their children face.

According to a 2017 survey, 72% of children in South Korea owned a smartphone by aged 11 or 12 spending approximately 5.4 hours a day on them. 60% of South Korean children under 9 are using smartphones. Although we are far less tech-savvy in the UK, this is a problem we share- for example, half of 9 to 16 year olds in the UK use smart phones every day. I try to stress to parents that they would not let their child open the front door at home and have an intimate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but this is exactly what they are allowing if their children use smartphone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over 95% of all child sexual exploitation in South Korea was arranged online. Furthermore, 2018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s show that of the 5104 cases of child sexual abuse reported in the last 5 years, that's 3 cases a day by the way, 94.1% of these cases involved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ose children aged 13 to 18 who have also been sexually abused, but who are instead framed as 'prostitutes', blamed and as a consequence, shamed.

I was recently appalled by the story of a 13 year old girl called [x] from [y], who suffered learning disabilities. It is impossible to argue that X had the ability to give informed consent due to her inherent vulnerabilities- both age and learning disabilities. She was sexually exploited by 6 adult males who intentionally contacted her through a chat application. However, rather than prosecuting the adults, the child was later found by the courts to be a 'spontaneous sex seller' because there had been no evidence of force from her abusers. It was alleged that she had willingly created her account on the chat application and had accepted food and the motel fee from the men.

This is not a case of 'child prostitution' or 'compensated dating', this is a textbook example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should be treated as such by the law and society as a whole.

We must acknowledge that children use the internet to source information. When this information concerns sex and sexuality, it brings an added risk if

the child does not already have a basic knowledge to contextualise what they find online. One group particularly at risk of this threat are LGBT children. A 2012 study by the University of Cambridge found that 1 in 4 young gay children don't have an adult to talk to at school, home or anywhere, and that 1 in 3 are ignored and isolated by others at school. It is no surprise then that they go online to seek information and to connect with others. Sadly, the abusers are aware of this and exploit the situation.

I have been campaigning for the UK Government to take bold action to keep our children safe online. One element of this is robust age verification schemes to prevent children accidentally accessing adult material. I am pleased to say that by the end of 2018, the UK Government intends to ensure that pornographic websites verify the age of anyone looking to go onto their site. 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entrusted with holding websites to account, will ensure that adult websites perform ID checks on all visitors and will issue enforcement notices against offenders. Further to this, the Offensive Weapons Bill currently moving through Parliament, will make it an offence to sell weapons over the internet without first verifying the age of the buyer. Failure to do so would bring serious criminal penalties and sets a precedent when it comes to online exploitation.

Clearly it is possible for governments to legislate to protect children from accessing material they should not be viewing online, and to improve responses to case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by the police, judiciary and other actors. But there is still more to be done. For example, we must ensure children are unable to gain access to apps with an adult-purpose. In June 2018, the UK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bring forward specific legislation to tackle a range of online harms, from cyberbullying to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Working with children, parents, teachers and charities I developed the idea of Dare2Care, a series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shared resources which seek to prevent child abuse and violence in teenagers' relationships before it occurs. Launched in 2016, Dare2Care has greatly influenced the

UK Government. Recently, the Government committed to bringing forward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line. Dare2Care also recommends compulsory Relationships Education in all primary schools, a commitment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 2020. This will provide children with the skills they need to recognise patterns of abuse and stay safe in relationships. More than anything, Dare2Care recognises that early intervention is the only effective way to prevent children from coming to harm.

Legislative changes have proven important in reflecting the shifts in cultural attitudes towards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Police and judicial responses have been improved through increased funding, national exposure of the crimes, convictions and training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children.

Perpetrators of CSE often prey on the underlying vulnerabilities and powerlessness in their victims, in order to assert maximum control. Here today, we must recognise that in South Korea, more than 80% of children who have been deemed 'child prostitutes' are also runaways. The number of runaway or missing children who are forced into child sexual exploitation each year as a matter of survival is estimated at 100,000.

In order to truly combat child sexual exploitation, we must prevent these crisis situations from manifesting in the first place by reducing these vulnerabilities. If we protect children on the cusp of running away from home, or intervene at school if we fear there may be familial problems or potential economic hardship, this intervention may break the cycle of abuse. In the UK we are also working tirelessly to bridge some of the gaps that society has created, and into which children in crisis often fall.

The additional complexity of consumerism in young people can also bring difficulties, leading, in the case of South Korea, to something I know you term 'compensated dating' (won-jo gyo-gee). The prevalence of this practice, as well as 'conditional dating' (jo-ge-on man-nam), has normalise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commodification of the female body on a mass scale.

87.9% of children who engaged in conditional dating received money in return, and 39.3% said they received items they desired. This should not be seen as evidence of a child giving informed consent, but an indicator that the child is being sexually exploited. 84.4% of these children had runaway experiences. Girls who engage in such activities are not 'child prostitutes' because they receive gifts, on the contrary, the gifts are evidence of their exploitatio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2 highlighted the following concerns to South Korea, I quote: 'drastic increase i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he high rates of pornography consumption, low rates of prosecution for CSE, lack of victim rehabilitation and support (especially for boys and men), reduction in budget allocations for prevention strategies and victim support despite increasing rates of CSE.'

This has to change.

Let us now reflect on the existing laws in South Korea, all of which refer to international age and not Korean age calculations.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a child is described as a person under 18 years. However, this definition is not consistent across all legislation. The age of marriage is also 18 years, but children can get married earlier with parental or a guardian's consent. Of particular concern is the age of consent in Article 305 of the Criminal Act- which remains at 13 years. This article is commonly used to defend CSE perpetrators, portraying young children between 13 and 18 years as consenting parties to sexual acts. I understand that a petition was lodged to increase this age from 13 to 16 years in 2012 but it is yet to be legislated. Raising the age of consent to 16 years would mirror the English law and is a pivotal prerequisite in better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By going one step further and increasing the age of consent to 18 years, this would eliminate any potential ambiguity between adulthood and consent.

The reluctance in South Korea to frame children as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t all stages - from societal attitudes, police officers during the initial reporting stages and within the judiciary when it comes to enforcement, perpetuates the issue of underreporting, leading to perpetrators not being brought to justice. Thus the cycle of abuse continues. This cycle must be broken by reviewing our rhetoric and choice of words and ensuring we treat all children through the lens of victimhood, instead of blaming and shaming.

As South Korea increasingly takes a greater role on the world stage, it is vital that your domestic law complies with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line with Article 6(1) of your Constitu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ratified in 1991,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00), ratified in 2004. According to the UNCRC, Article 34, I quote; 'States should protect children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e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gulates the applications and online spaces where sex-trafficking and online grooming are facilitated. I commend the NGO 'Stand Up Against Sex Trafficking of Minors', for continuously lobbying the government to shut down some of these applications to ensure that online spaces are safer for children, regrettably to no avail.

It is my understanding that often these apps are not classified as harmful unless there is clear evidence in the title of the chatroom pertaining to sexual intercourse- meaning most slip through the gaps. In the UK, we have recognised the need to regulate these applications and websites, and to hold them to account for enabl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though I admit the process is painfully slow.

Although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e committed to supporting child sex-trafficking victims, the lack of an exclusive governmental body to combat CSE has led to policy fragmentation. With no long-term strategy and cohesion, this will inevitably lead to no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therefore limited progress. I would reinforce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CRC Committee to create a children's rights sub-committee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well as to evaluate the success of the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One way in which inherent vulnerabilities of many children in South Korea can be detected and remedied is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Through teaching children the potential dangers of online grooming and CSE, as well as tackling any mental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ducation system, peer pressure or bullying in schools- we are better-placed to support vulnerable children.

In 2012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laid down their recommendations and observations, having examined the reports submitted by South Korea. The Committee has stressed the urgent need for 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a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consent and decrease the number of unplanned pregnancies in young girls.

Where bullying, harassment and violence begin in schools as a result of competitive education systems, this often permeates beyond the school environment, and normalises exploitation further afield. Though schools may indeed be a source of the problem, they are also often the answer- providing a platform to educate children on safe relationships, the dangers of online grooming, how to confront peer pressure and bullying etc. I hope that South Korea will follow the UK's example and prioritise compulsory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in schools, in order to prevent abuse, as well as provide better training for teachers and parents on supporting young people to not only strive for success, but also to be safe, secure and happy.

Scholars have long argued that delayed social awareness of child abuse in all its forms in South Korea can largely be attributed to traditional Confucian teachings. With childrearing traditionally confined to the private sphe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tate, this leaves the government unaware of underlying situations, until they become fullyfledged crises - at which point the government is unprepared. It has been argued in Korea that 'law cannot jump over the family fence', but there should be no space exempt from legal regulation. There is no better justification for intervention than the protection of the next gener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se children. In the UK, around 90% of all child abuse occurs within the extended family, I do not doubt that similar statistics can be found in Korea. Ultimately, we should not speak of barriers or fences - there is no fence too high that I personally won't jump in order to protect some of our most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I've jumped a fair few in the UK.

I implore you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to both law and societal attitudes in order to shift from victim blaming and shaming in cases of CSE, to survivor support as a matter of urgency.

Kam-sam-knee-da  
(Thank you)

## 〈SUPPLEMENTARY MATERIALS〉

Sarah Champion

*Member of Parliament for Rotherham (UK)*

## CONTENTS

### **1. Timeline of UK Parliamentary Child Sexual Abuse (CSA) Reforms**

- 1.1. UK CSA Legislation (1989- present)
- 1.2. CSA Treaty Ratifications (UK)
- 1.3. UK Statutory & Non-Statutory Guidance & Policy  
(2013- present)

### **2. Briefings on Child Sexual Abuse (CSA) Legislation in the UK**

- 2.1. Sexual Offences Act (2003)
- 2.2. Serious Crime Act (2015)
- 2.3. Criminal Justice & Courts Act (2015)

## 1. Timeline of UK Parliamentary Child Sexual Abuse (CSA) Reforms

### 1.1. UK CSA Legislation (1989 - present)<sup>1)</sup>

- 1989 Children Act** - *Outlines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child protection: nature of child welfare and standards of duties of care to children.*
- 1997 Sex Offenders Act** - *Established the sex offender's notification system through a series of monitor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 2003 Sexual Offences Act** - *Introduced a range of offences which recognised the grooming, coercion and control of children. (Please see separate briefing note)*
- 2003 Criminal Justice Act** - *Established the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s) to assess risks posed by sexual or violent offenders.*
- 2004 Children Act** - *Strengthened the 1989 Act by ensuring greater accountability of local authorities in child safeguarding. Introduced the post of Children's Commissioner to make governmental recommendations on how best to promote interests of children. Set up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 to review child deaths and serious case reviews.*
- 2006 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 *Established the 'Independent Safeguarding Authority' (ISA) to decide on individuals who should be prohibi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and maintains a list of these individuals.*
- 2015 Criminal Justice & Courts Act** - *Created the offence of disclosing private sexual photographs or films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individual concerned and with intent to cause that individual distress, also amended laws on grooming. (Please see separate briefing note)*
- 2015 Serious Crime Act** - *Enacted a number of specific provisions to protect vulnerable children and others, as well as removed all references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the law.*

<sup>1)</sup> *Geographical extent and application of each Act may vary according to each provision.*

*(Please see separate briefing note)*

- 2015 Modern Slavery Act** - *Created new offences relating to trafficking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UK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 2017 Children & Social Work Act** - *Requires all schools to provide relationships education to pupils receiving primary education, and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to pupils receiving secondary education. Also requires all schools at all levels to provide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PSHE).*
- 2017 Digital Economy Act** - *Requires providers of internet pornography to prevent access to their material by under 18 year-olds or face fines. Created an age verification regulator to publish guidance on how this should be achieved. Also requir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block access to platforms which make extreme online pornographic material in the UK.*

## **1.2. CSA Treaty Ratifications (UK)**

- 2018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Lanzarote Convention)** - *UK government has recognised the cross-border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CSA)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prosecuting child sex offenders.*

## **1.3. UK Statutory & Non-Statutory Guidance & Policy (2013- present)**

- 2013 ‘Guidelines on Prosecuting Cases of Child Sexual Abuse’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sup>2)</sup>**- *Lays out the approach prosecutors should take whe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child sexual abuse, how to support victims and witnesses, identifying*

2) CPS, ‘Child Sexual Abuse: Guidelines on Prosecuting Cases of Child Sexual Abuse’ (Issued 17 October 2013, revised 26 July 2017). Available at: [www.cps.gov.uk/legal-guidance/child-sexual-abuse-guidelines-prosecuting-cases-child-sexual-abuse](http://www.cps.gov.uk/legal-guidance/child-sexual-abuse-guidelines-prosecuting-cases-child-sexual-abuse) Last accessed August 2018.

- children who may be at risk, and the importance of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child abuse allegations and not credibility of the witness.*
-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sup>3)</sup>** - *Guidance on legislative requirements of how service providers should safeguard children, organisational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of the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 2016**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 Girls Strategy (2016-2020)’ (Home Office)<sup>4)</sup>** - *Government strategy outlining a shift from crisis response to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Includes action plan for preventing violence and abuse, preventing online abuse and exploitation, provision of services, partnership working and prosecuting perpetrators.*
- 2017** **‘Sexual Violence & Sexual Harassment between Children in Schools & Colleges’ (Department for Education)<sup>5)</sup>** - *Guidance for schools and colleges on what 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s and how to minimise risks and react when incidents do occur.*
- 2018**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HM Government)<sup>6)</sup>** - *Revised guidance with a focus on early help, strengthening*

3) 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Statutory Guidance, 26 March 2015)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 Last accessed August 2018. *Please note: applies to England only.*

4) Home Office, ‘Strategy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2016–2020’ (Policy Paper, 8 March 2016)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rategy-to-e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2016-to-2020](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rategy-to-end-violence-against-women-and-girls-2016-to-2020) Last accessed August 2018.

5) 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Sexu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between Children in Schools & Colleges’ (Guidance, 14 December 2017)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xual-violence-and-sexual-harassment-between-children-in-schools-and-colleges](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xual-violence-and-sexual-harassment-between-children-in-schools-and-colleges) Last accessed August 2018. *Please note: applies to England only.*

6) HM Government Department for Education,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Statutory Guidance, July 2018).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http://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rking-together-to-safeguard-children-2) Last accessed August 2018. *Please note: applies to England only.*

*referral mechanisms and policies for organisations and agencies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in dealing with allegations made against those who work with children. Aforementioned LSCBs replaced by 'Safeguarding Partners'.*

## **2. Briefings on Child Sexual Abuse (CSA) Legislation in the UK**

### **2.1. Sexual Offences Act (2003)**

In response to numerous public consultations and governmental reviews on the need to reform the law on sexual offences,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uch, the Sexual Offences Act (SOA) was enacted in 2003. This Act applies in its entirety to England and Wales only, with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passing corresponding legislation in 2009 and 2008 respectively. These legislative developments were a result of changing societal attitudes, as well as increased awareness of the extent of child sexual abuse and recognition of forms of abuse and exploitation which were not covered within the previous sexual offences legislation.<sup>7)</sup> The 2003 Act includes provisions on sexual grooming, coercion and control of children, expanded the law on rape and reformed provisions on consent, as well as the management of sex offenders.

### **Categories of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sup>8)</sup>**

#### **Children under 13 Years**

7) For further discussion on policy background of the SOA (2003), please see: House of Commons Library, 'The Sexual Offences Bill (HL): Policy Background' (Research Paper 03/61, 10 July 2003) Available at: [www.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03-61/RP03-61.pdf](http://www.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RP03-61/RP03-61.pdf) Last accessed August 2018.

8) College of Policing, 'Major Investigation and Public Protection: Child Sexual Exploitation' (Guidance) Available at: [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and-public-protection/child-sexual-exploitation/#legislation-and-the-law](http://www.app.college.police.uk/app-content/major-investigation-and-public-protection/child-sexual-exploitation/#legislation-and-the-law) Last accessed August 2018.

-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13 is an offence regardless of consent or the defendant’s belief of the child’s age.’
- Offences are: *rape, assault by penetration, sexual assault & causing or inciting a child under 13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 Offences carry the maximum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14 years’ imprisonment depending on the offence.

#### Children under 16 Years

- ‘These offences apply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consented to the sexual activity but, unlike the offences relating to children under 13, an offence is **not** committed if the defendant **reasonably believed that the victim was 16 years or over.**’
- Offences are: *sexual activity with a child, causing or inciting a chil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engaging in sexual activity in the presence of a child, causing a child to watch a sexual act, arranging or facilitating the commission of a child sex offence & meeting a child following sexual grooming.*
- Offences carry a minimum sentence of 10 or 14 years’ imprisonment.
  - Where offender is under 18, maximum sentence is 5 years’ imprisonment.
  - If offences are committed against a child under 13, defendant’s belief of the age of the child is irrelevant.

#### Children under 18 Years

- A number of sexual offences in the Act apply to all children under aged 18 - including abuse of a position of trust and familial child sex offences.

## 2.2. Serious Crime Act (2015)

The Serious Crime Act (SCA) (2015) collated together and amended a body of laws relating to serious and organised crime, as well as enacted a number of specific provisions to protect vulnerable children and others. This briefing focuses on Part 5 of the Act, ‘Protection of Children’. These reforms mirror changes in societal attitudes and understandings of abuse, especially

concerning children in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 Key Changes

- Offence of ‘child cruelty’ clarified in Children & Young Persons Act (1933), as explicitly including cruelty causing psychological suffering/injury as well as physical harm.
- Replaces anachronistic references to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SOA (2003), which previously implied informed consent on part of child. (s.68)

### Removing References to ‘Child Prostitution’ & ‘Child Pornography’

In 2012, the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recommended a review of all legislation and guidance which referred to children as prostitutes or implied their involvement in prostitution.

*‘Concerns about the continued use of this terminology were reiterated to a cross-party inquiry into child sexual exploitation chaired by Sarah Champion (MP) in April 2014, including its impact on attitudes towards victims and reinforcing misconceptions.’<sup>9)</sup>*

S.68 of the SCA (2015) amend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OA (2003) to remove references to ‘child prostitute’,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replaced them with references to child sexual exploitation.

S.68 also amended s.1 of the Street Offences Act (1959) to make the offence of loitering or soliciting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 **only applicable to persons aged 18 or above:**

*‘It, in effect, decriminalises under-18s selling sex in the street and in doing so again recognises children as victims in such circumstances rather than*

9) Home Office, ‘Serious Crime Act Factsheet: Child Sexual Exploitation’ (Factsheet, March 2015) Available at: [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040/Fact\\_sheet\\_-\\_Child\\_sexual\\_exploitation\\_-\\_Act.pdf](http://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6040/Fact_sheet_-_Child_sexual_exploitation_-_Act.pdf) Last accessed August 2018.



*consenting participants (buying sex from an under-18 in any circumstances would remain illegal).<sup>10)</sup>*

### **2.3. Criminal Justice & Courts Act (2015)**

Following concerns raised by campaigners and Parliamentarians alike about ‘Revenge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 the government legislated new criminal offences to ensure that such acts are protected against in the law. ‘Revenge Pornography’ is a term used to denote the uploading or distribution of intimate sexual images of the victim, in order to cause the victim humiliation or embarrassment.<sup>11)</sup>

#### **‘Revenge Pornography’ (s.33)**

S.33 creates the offence of disclosing private sexual photographs or film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ho appears in the aforementioned materials, with the intent to cause that individual distress.

- This new offence is punishable with a maximum sentence of 2 years’ imprisonment.
- Defining ‘Disclose’: *‘The offence will apply to any kind of disclosure of private sexual photographs or films. This could include uploading images on the internet, sharing by text or email, or showing someone a physical image. The offence applies equally online and offline and to images which are shared by electronic means or in a more traditional way.’<sup>12)</sup>*
- Photograph or film needs to be ‘private’ and ‘sexual’ in order to fall within the remit of the offence.

10) Serious Crime Act (2015), ‘Explanatory Notes: s.68 Child Sexual Exploitation’ Available at: [www.legislation.gov.uk/ukpga/2015/9/notes/division/3/5/2/3](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9/notes/division/3/5/2/3) Last accessed August 2018.

11) CPS, ‘Revenge Pornography: Guidelines on Prosecuting the Offence of Disclosing Private Sexual Photographs and Films’ (Revised January 2017) Available at: [www.cps.gov.uk/legal-guidance/revenge-pornography-guidelines-prosecuting-offence-disclosing-private-sexual](http://www.cps.gov.uk/legal-guidance/revenge-pornography-guidelines-prosecuting-offence-disclosing-private-sexual) Last accessed August 2018.

12) Ibid.

**‘Sexual Grooming’ (s.36)**

This provision amends s.15 of the SOA (2003), the offence relating to meeting a child following sexual grooming, so that the number of occasions upon which the defendant must meet or communicate with the child in question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offence is reduced from two to one.

*‘As now, following any initial communication or meeting, the defendant must intentionally meet, arrange to meet, or travel with the intention of meeting the child, or the child must travel with the intention of meeting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must intend to do something to or in respect of the child during or after any meeting.’<sup>13)</sup>*

13) HM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Justice & Courts Act 2015’ (Circular 2015/01, 23 March 2015)  
Available at:  
<[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8204/cjc-act-circular.pdf](http://www.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28204/cjc-act-circular.pdf)> Last accessed August 2018.



조진경, Cho Jin Kyeong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Session 1  
국가별 보고

한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주요 경력

- 2003년 1월 ~ 2004년 2월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
- 2003년 9월 ~ 2009년 1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
- 2011년 1월 ~ 12월 여성가족부 용역 실태조사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 '외국인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12년 12월 ~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2003년 ~ 2008년 서울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실무위원
- 2006년 ~ 2008년 경찰청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자문위원
- 2006년 ~ 2008년 여성가족부 생계집해형 성피해 방지대책단 위원
- 2006년 ~ 2008년, 2014년 ~ 2017년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부대표
- 2007년 ~ 2008년 성매매 집결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2007년 ~ 2008년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정책위원장
- 2013년 ~ 2015년 법무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
- 2017년 ~ 현재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수상 경력

- 2004. 07. 경찰청장 감사장
- 2005. 07.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수상
- 2014. 05.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장
- 2017. 01. 여성신문 <2017 미래를 이끌어 갈 여성지도자상> 수상
- 2017. 04. 국제소류티미스트 한국협회 <루비상> 수상
- 2018. 06. 정의기억재단 제2회 <길원옥 여성평화상> 수상

## 1.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사건 일지

### 1)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A양이 가출 한 후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소녀 4명에게 성매매 강요,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고, 특히 가해자 들 중 십대 소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A양의 죽음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해 소녀들이 A양과 같이 2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구타와 협박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 중 한 소녀는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하는 등 모친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한 사실을 밝히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현행 아동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 2)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2015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성매수자가 스마트폰 채팅앱 ‘줄O’을 통해 14세 소녀를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수 한 후 소녀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1:1 성매매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알선범죄자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채팅 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알선 범죄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이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알선자 3인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 중 1인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다.

### 3) 2016년 만 13세 지적 장애 '하은이'를 성매수하여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기로 결심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인 '하은이'는 엄마가 심심할 때 채팅하라고 알려준 채팅 앱 '친구 000'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후 성인 남성들에게 1주일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 어렵게 '하은이'를 찾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는 하은이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하였지만, 가까스로 찾은 6명의 가해자들은 강제나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수사되지 않았고, 성매매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떡볶이나 치킨 등을 제공받는 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가해자들을 항고하고 줄기차게 성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가해자들은 전부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2015년 동안 가해자 5인은 성매수로 처벌받았고, 이에 2016년 '하은이'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므로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더욱이 사건 초기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로 수사한 점이나 성매매 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 현행 법률인 아동법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 4)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2016년 알선자들에 의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여중생이 성매수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된 사실이 2017년 밝혀진 사건이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채팅 앱의 특성으로 이 여중생을 성매수한 남성들의 신상파악에 실패했고, 여중생을 성매수한 가해자들 중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

### 사례 1)

201\*년 만14살 B아동이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 사촌들과 랜덤채팅을 하면서 놀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채팅사이트로 계속 B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와서 신기해서 계속 채팅을 주고받았다. 남성은 20대라고 나이를 속였고, B는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후 엄마가 야간근무를 하여 부재중인 늦은 밤, 30대 가해 남성은 아이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꼬여 만나서 몇시간 동안 운전하여 B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곤하니 잠깐 눈만 붙이겠다. 아무짓 안하겠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여 성폭행하였다. 낯선 곳에 있어 데려다주는 차를 타야했고, 거기서 2만원을 던져주는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집에 돌아왔지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고, 임신까지 하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B의 학교에 임신사실을 알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고, 강제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했으며 가해자는 B에게 용돈을 벌여오라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려하였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 중 법정 구속되면서 B에게 떨어질 수 있었지만, B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1년이 지나서야 친구에 의해 본 센터로 찾아왔다. 그러나 성폭력,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B가 만 14세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지, 2만원을 왜 받았는지, 돈을 받았으면 성매매를 한거 아닌지 등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되었다.

### 사례 2)

201\*. 32세 성매수자는 채팅 어플 ‘앙O’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 C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1회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때 성매수자는 C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후 C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성매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C의 개인 페이스북에 C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너무 놀란 C는 개인 SNS 개정을 삭제하고 거절하였으나 새로 만든 페이스북에 C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C는 두려움에 떨며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센터에서는 경찰과 동행, 경찰은 현장검거를 통해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체포한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서 수많은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또다른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 성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21명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사례2의 성매수자는 아동·청소년이 학생일 경우 훨씬 험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미성년, 학생들을 주로 성매수 대상으로 노린 후 이를 촬영, 험박해왔지만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애매한 점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나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도움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폭력은 해바라기센터, 경·검찰의 여성 청소년과 등에 신고할 수 있지만, 단속과정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자발적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점에서 2차 피해 등이 심각하다.

### 2)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자발적 성매매로 본다는 점

성인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업소에 고용된 형태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업주가 실제 존재함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이므로 사실상 업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나 어플에 접속하여 스스로 방을 만들고 성매매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봄으로써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자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이트나 채팅 어플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전제는 성매매의 모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알선업자들이나 또래 포주들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인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는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관악구 14세 아

동 살해사건이 그러하다.

### 3) 법적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후견인에 의해 법적 권리가 행사되고 보호된다. 전적으로 부모 등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에게, 학교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보통 어떤 범죄적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알선업자나 성매수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성병이나 임신 등의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더욱이 혼자서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을 찾아 갔을 때 생기는 2차 피해(낙인, 비난 등)에 대한 걱정으로 가출을 선택하거나 알선업자, 성매수자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알선업자나 성매수자들은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마주치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과 너도 처벌받는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 4) 그루밍 수법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방법은 친근한 말투, 칭찬하기, 선물사주기, 용돈주기, 밥 같이 먹기, 영화 같이 보기, 나쁜 짓 허용하기, 놀러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길들여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장악한 후 범죄에 이용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연인관계로 착각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더라도 신고하기를 꺼리고, 단속에 걸려서도 이들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성매수 범죄자나 알선업자들은 초기 길들이는 과정에서의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을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연인관계의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 5) 심각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성장기여서 흔히 불안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놓여 있다. 즉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멋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결과나 미래를 예상하며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청



소년시기를 미성숙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다수의 성매수자들과의 성적 행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심각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잦은 자살시도, 알콜중독, 정신분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특히 돈을 받으면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행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인지하거나 폭력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등 이후 정상적인 관계성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위 사례 1의 아동 B는 환청과 환시, 왜곡된 인지로 인한 폭력적 성향 및 대화 불능상태 등이 나타났다.

## 6) 성매수자들에게 안전한 채팅어플

완전한 익명성과 대화내용의 휘발성, 짧은 기록저장 기간 등 성매수자의 성착취범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무작위 단속의 위험성을 늘 의식하면서 성을 구매해야 하는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알선업자/성매수자들에게는 너무나 안전하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수 범죄는 특성상 미성년자가 다수 이용하는 채널로써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매수자들은 성인들에 비해 직업적이지 않은 소녀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소녀들은 협박에 취약하고 결코 혼자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알선/성매수자들에게 각광받는 매체이다. 2017년 6월 현직 경찰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를 성매수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은 스마트폰 어플이 성매수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조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TV 방송의 특징<sup>1)</sup>

###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특징

#### (1) 익명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바로 입장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익명으로 대화에

1)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 작성함

참여하고 핸드폰번호와도 전혀 상관없이 닉네임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은 채팅과 채팅을 통한 만남의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성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은 성매수 알선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둔갑하여 채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매우 많다.

## (2) 성인인증절차

현재 존재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성인인증절차가 없다. 대신 나이 설정을 20세 이상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닉네임에 ‘15’, ‘열7곱’, ‘고등학생’ 등의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성매수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중 어떤 것들은 성인인증절차 없이 나이 설정을 17세부터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3) 대화내용 저장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구매/알선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특징은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내용을 따로 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대화창을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성구매/알선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우 유용한 특징이 된다.

## 2) 일부 어플리케이션 운영방식의 변화

### (1) 캡처 불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캡처가 되지 않도록 운영자가 캡처를 막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성매수/알선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캡처화면을 증거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된다.

### (2) 포인트 방식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 채팅을 시작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활용은 운영자가 이익을 얻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80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쪽지를 보내 1:1 채팅방을

개설할 때만 포인트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답장이 오면서 대화가 이어질 때 꼭지마다 지속적으로 일정 포인트가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운영자뿐 아니라 채팅을 이어가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포인트가 돌아가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특징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포인트 활용 특징은 성매매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영상

성매매 정황이 활발히 보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영상채팅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성 사용자가 포인트를 소요해 영상채팅을 하면, 여성 사용자에게 포인트가 충전되고 현금으로 환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 3)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데이트의 명목으로 매우 자주 탈바꿈하고 있다.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자주 바뀌고, 현재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 매우 많다.

### 4) 신조어 변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성매매 관련 용어는 대부분 줄임말, 신조어이고 이러한 용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상의 환경 특징이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금지어로 제재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조어를 계속 생성해내는 이유도 있다. 많이 사용되고 있던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건전/비건전/반건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건전’은 애인대행/식사 등의 만남을 의미하고, ‘비건전’은 성관계를, ‘반건전’은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전만남이라고 해서 실제로 ‘애인대행/식사’등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근 사진/영상 등을 공유 받는 것에 대해 대가를 주는 식의 성매매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신조어가 ‘온플’이다. ‘온라인플레이’의 줄임말로써 온라인 상으로 사진/영상 등을 공유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성매매 정황이다.



## 6) 성매매 정황이 파악되는 SNS

### (1) 페이스북

-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스폰,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됨.
-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로 계정 이름을 설정하여 사용 중이고, 실제 성매매 업소 업주들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업소 홍보를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보고 성매수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2)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섹스타그램’, ‘오프’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음란물 혹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게시함.
- 보통 자위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개인 이용자인 것으로 추측됨. 게시자에게 DM(인스타그램 내 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냈다는 댓글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성매매 제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조건만남 등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은 성매매 업소 업주가 게시하는 것으로 보여짐.

### (3) 트위터

- ‘조건만남’ 및 유사성행위(자위 영상 및 사진 판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매매 유인 글이 많이 게시되고 있음.
- ‘조건만남’검색 시 업소 홍보가 많이 서칭됨.

## 7) 섹시방송

인터넷 검색창에 ‘섹시방송’이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사이트들이 검색된다.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가입부터 방송 시청까지 모두 무료이다. 아프OOTV에서 영구정지를 당한 섹시BJ들이 섹시방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섹시방송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섹시BJ들이 노출 의상을 입는 이유가 의상은 곧 시청자수와 별풍선(섹시 방송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현금으로 환급 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 돈을 쓰는 것을 별풍선이라고 칭하겠다.) 수익에 연계가 된다. 시청자들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규제가 없는 섹시방송에서 높은 수위의 방송들이 진행된다. 일부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선결제를 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방송도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방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섹시방송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리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에서는 쪽지를 보내기 위해 포인트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섹시방송은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이 24시간 진행되고, 직장인 남성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9시 이후부터 섹시BJ들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별풍선을 쓰는 것에 대해 BJ가 해당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이 욕구를 채우고 있다.

#### 4. 지원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시스템 및 법률의 문제점

‘일명 하은이 사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 1) 사건배경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OO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 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 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OO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출한 후 당한 성폭력 사건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2차 성폭력 사건으로 따로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나 첫 번째 가출후 성폭행당한 사건은 아이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개설했고, 떡볶이나 치킨 등을 얻어먹었다 하여 자발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성폭력사건을 지원했던 해바OO 아동센터에서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의 의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선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 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이라 더 이상 국선변호사로서 사건을 변호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2) 경과

|               |   |
|---------------|---|
| 2014.7.8      | 해와나무 상담소(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지원단)를 통해 사건 의뢰됨.  |
| 2014.7.14     | 7.14 당시 피해자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중이어서 외출시, 방문 상담함.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6. 6 핸드폰 액정을 깨트린 실수로 모친에게 혼이 날까봐 가출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뒤, 이후 만나게 된 남성들 6명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그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들이 진행중임을 파악함. 내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사건 직후인 6. 15부터 상담 의뢰된 이후인 10월까지도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가장이었던 모친 역시 사건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하며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
| 2014. 12      | 6명의 가해자(A, B, C, D, E, F) 중 12. 24 A와 12. 31 B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됨을 알게 되어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논의하여 항고장 제출 뒤, 재기 수사 결정됨. 그러나 A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6명의 가해자 형사 공판 종료 후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모친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보상을 위해 각 건마다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 변호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 2015. 2       | 가해자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최석봉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일부 승소함(서울동부지법).  |
| 2015. 4       | 가해자 D: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선고됨. 이후 2015. 6 본 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서울서부지법).  |
| 2015. 5       | 본 건의 피고인 E: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선고됨. 선고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으로 생긴 공백으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되어 판결 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를 하지 못함. 이후 2015. 7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진수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4. 28 원고 패소함(서울서부지법).  |
| 2015. 6       | 가해자 F: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검사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본 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2017. 6. 원고 일부 승소함.   |
| 2015. 9       | 가해자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선고됨. 피고인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선고됨. 이후 2015. 11 본 센터 법률지원단장 서순성 변호사, 기희광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2016. 6. 원고 패소함. 항소하여 2017. 1(?) 일부 승소함.   |
| 2016. 5       | 같은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C와 본 건 E의 판결이 재판부마다 상이하여 패소한 E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및 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함. 2016. 10. 일부 승소함.  |
| 2017. 12 - 현재 |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던 A의 수사재기 됨, 현재까지 형사소송 진행 중임. 본 센터 변호인 측에서 성폭력범죄로 재기소하기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 사건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지원체계, 현행 법률(아청법)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3) 드러난 문제점

#### (1) 편의적 수사, 성의없는 수사, 전문성없는 수사

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됐는지?

-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만 13세였음과 경계성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의 가출 1주일 동안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사건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별사건으로 수사
- 연령 및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단순한 적용
- 스마트폰 어플에 방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제안한 것으로 인지(대상청소년 개념 적용)
- 떡볶이, 치킨 등을 얻어먹고, 모텔방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등에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
- 나아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어 모텔비를 가해자가 보태서 내고, 성폭력 후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대가성이 없다고 기소도 하지 않음.

(2)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초기 수사지원을 했던 해바OO 아동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끊음  
- 아동·청소년에게도 성폭력과 성매수 범죄를 구분하는 지원시스템의 문제

(3)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원 시스템 부재(상담소, 검경 찰에 전문 부서 부재 등)

(5) 너무 약한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 문제라는 인식, 성인 성매수자의 존재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청소년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자세.
- 범죄를 위축시키지 못하는 처벌 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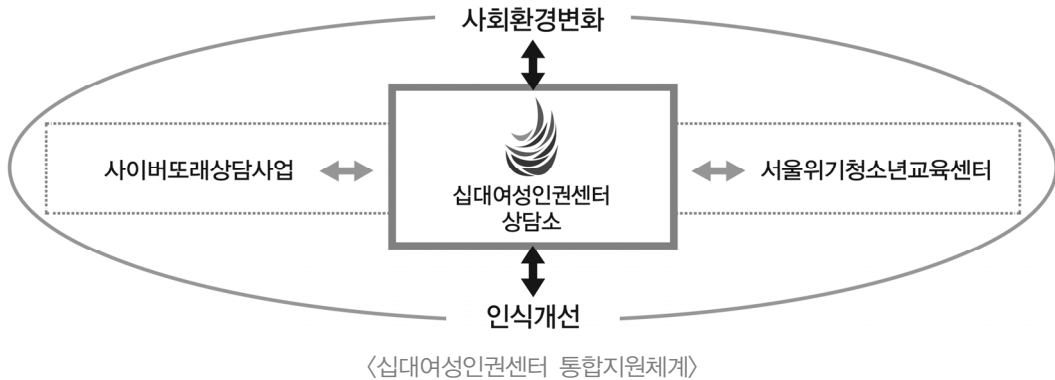
(6) 형사상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우선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아청법상 자발적 성매매를 한 아동으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것의 의미는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 되며, 그럼에도 성매수자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지 개인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성매수자는 이 피해 아동이라고 불리는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 5.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체계<sup>2)</sup>

그렇다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해야할까.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모든 지원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내담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안에는 발견-직접지원(법률/의료/심리/주거/학업/일자리)-교육의 내용이 함께 그려져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통합지원체계는 직접지원에 있어 법률/의료/심리지원을 제외한 주거/학업/일자리지원은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연계서비스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통합지원체계는 아니나, 가장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법률/의료/심리지원의 경우 시급하게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최희연(2018).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내담자 지원현황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2018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자료집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통합지원체계에는 사이버도래상담사업,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있다. 사이버도래상담사업은 사이버상(채팅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등)의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현실공간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거래가 오가고 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아웃리치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에 한계가 있어 온/오프라인 아웃리치와 정보제공, 대상의 욕구에 따른 연계를 이어오고 있다.

사이버도래상담사업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발견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면상담의 과정을 거쳐 직접지원과 교육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의료/심리지원을 통한 직접지원을 위해 60여명의 전문인력(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은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상담/연계를 통해 내담자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와 소송대리를 의뢰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변호사 소송대리와 더불어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검·경찰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다. 법률지원 외에도 내담자의 성착취피해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구하거나, 지원단의 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기관 동행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성매수자 및 그 주변인들로 인한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강금 등의 피해경험 외에도 가족의 부재, 방임, 학대,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인기로 접어들기 전 이러한 복합적 원인의 심리·정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지속적인 1:1심리치료를 통해 가능하다. 심리지원단은 이처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든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전문심리

치료사로서 성착취피해경험의 재해석을 통한 탈성매매 및 미래설계를 도모하는 데에 힘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은 상담원이 하게 되는데, 상담원은 전문지원의 총괄자로, 혹은 내담자 주변(부모, 교사, 알선자, 구매자, 남자친구, 또래집단)을 둘러싼 관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판단될시 즉각 개입하여 대처하게 된다. 이는 법률·의료·심리지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간과하기 어려운 사건에 그때그때 사례회의를 열고 논의함으로써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찾는다. 각각의 지원단은 내담자 지원 외에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4박5일 청소년성장캠프 강사로 참여하고, 성장캠프는 교육상담원과 아동·청소년들이 4박5일의 40시간 교육과정을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교육상담원과의 라포형성 및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의 전문교육을 통해 캠프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건강한 어른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캠프를 시작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다.

## 6. 십대여성인권센터 통합지원 사례

201X년 당시 17살이었던 내담자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알선자의 유혹으로 가출하여 그 집에 감금되었으며, 지속적인 성매수 알선 및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던 중 알선자와 성매수자간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 되면서 내담자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찰서로 차량이동 중 내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 이에 가해자는 내담자를 연인사이로, 성매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협박하였으며, 이에 내담자는 경찰에서 거짓진술 하였다. 결국 내담자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되었고,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내담자는 모에게 그간의 상황을 다 얘기했고, 내담자 모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도래상담실로 잘못된 경찰수사에 대한 문의와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사이버도래상담실과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함께 대면상담을 진행하였다. 대면상담 때에 내담자는 지속적인 알선자와 성매수자들로 인한 피해로 정서적인 불안감이 몹시 심각한 상태였고, 어머니 역시 내담자의 피해사실에 충격이 커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에 내담자와 모를 분리하기로 하고, 진행 중이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4박5일)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후 캠프기간동안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털어놓고 이해받는 과정의 개별상담시간을 매일 가졌다. 또한, MMPI검사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또래는 물론 본

인을 지지하는 어른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                                |   |   |
|--------------------------------|---|---|
| <p><b>사이버도래상담 사업</b></p>       | <p>초기상담접수(내담자 모), 정보제공 및 초기대면상담진행.</p>  |   |
| <p><b>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b></p>     | <p>청소년성장캠프(4박5일) 및 희망키움과정(2박3일) 교육진행, 내담자 사전·사후상담을 통해 일상복귀하여 그 후 자퇴하겠다는 내담자를 설득, 학교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서지원하여 현재 재학 중.</p>   |   |
| <p><b>상담소<br/>십대여성인권센터</b></p> | <p>법률 지원</p>  | <p>〈피의자 조사된 관련 내용〉<br/>                     - 가정법원 재판참여와 모니터링하며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br/>                     - 경찰조사 중 받은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진행상황 파악.<br/>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면담진행.<br/>                     - 대상청소년으로 사회봉사의무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p> <p>〈성매매알선 및 강요, 강간사건〉<br/>                     -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를 선임.<br/>                     - OO지방검찰청에 성매수자와 알선자의 강요, 강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죄목으로 고소장 제출.<br/>                     - 6차례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및 재판 모니터링(강간 무혐의)<br/>                     - 항고, 재정신청.<br/>                     - 의견서, 진정서, 탄원서 등 제출.<br/>                     - 동일 알선업자에 의한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 4인 추가 발견, 사건병합 재판<br/>                     - 6년 징역형 판결. 1심 판결 후 가해자 항소하여 진행 중.</p> |
| <p>의료 지원</p>                   | <p>하루 평균 2~3차례의 조건만남과 알선자에 의한 강간으로 부인과 질병이 심각할 것으로 의심되었음. 의료지원단을 통해 산부인과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실시함. 정신과 진료.</p> |   |
| <p>심리 지원</p>                   | <p>내담자는 성매수 범죄 피해와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혼란이 야기되었음. 이에 심리지원단(심리치료사)과 총 18회기의 1:1심리상담을 진행함.</p>         |   |

## 7. 사이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대책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sup>3)</sup>

### 1)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어플,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3)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티’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자발/강제를 통해 피해자를 구별하고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

는 협박과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 발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통합개정안)되어 있으며,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 Legislation on protection for child/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buse. - Korean presentation

Cho, Jinkyong

Executive Director,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 1. Yearly Record of Sex Trafficking of Children / Adolescents

#### 1) Murder of a female high school student from Gimhae, 2014

Female high school student A from Gimhae ran away from her home in 2014. She was then subject to coerced sex trafficking, beatings and abuse until death by 3 males in 20s and 4 females of approximately 15 years of age. After her death, they attempted to destroy evidence by burning A's face, burying her body in the ground and pouring cement over it. The gruesomeness of the crime as well as the fact that teenage girl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rime caused outrage among Korean society, and became one of the grounds for advocating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However, another aspect of the crime exists: along with A, the teenage female perpetrators experienced coerced sex trafficking, beatings and threats by the male perpetrators in their 20s. One of the adolescents alleged that with the help of her mother, she reported the male perpetrators to the police. According to her, the response of the police was to state "You participated in prostitution? Then you will be punished too", thereby revealing in front of her mother the fact that she participated in sex trafficking. Such police treatment effectively prevented her from pressing charges. Her recount clearly revealed the problem with the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 2) Murder of a 14-year old girl in a motel at Gwanak-gu, 2015.

A sex buyer in his 30s met a 14 year old girl as a 'conditional meet-up' through a chat app called "Zeul\_\_\_" at a motel in Gwanak-gu, Seoul in 2015. After buying sex, he covered her mouth with gauze coated with anesthetics,

and choked her to death. The general public perception at the time was that child/adolescent sex trade through the chat apps were arranged voluntarily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crime revealed the existence of criminals who arranged sex trafficking through the chat apps, clearly exposing the appalling reality of sex trafficking against children/adolescents. The three perpetrators systematically arranged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through the chat apps. They advertised the apps to runaway adolescents, interviewed them, and moved them around the country while arranging sex trafficking of them. They used motels as accommodations. One of them lured the 14 year victim by claiming that he loved her, and lived with her while he negotiated the conditions with the sex buyer through chat apps, moved her to the place of sex purchase, and finally extorted the payment.

**3) In 2016,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found that the sex buyer is not liable for damages, in a case which involved sex trafficking of “Ha-eun”, a 13 year old gir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eun’, a 13 year old gir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ecided to run away from home because she feared her mother’s scolding when she dropped and broke her mother’s mobile phone. Her mother had taught her how to use “Friend \_\_\_\_\_”, a chat app to play with when she became bored. She used the app to find ‘someone to let her sleep’, and was subject to sexual violence for a week by adult males. After managing to find ‘Ha-eun’, her mother reported the sexual violence to the police. The police found 6 perpetrators but forewent investigations of sexual violence, citing lack of coercion or violence. Only investigations into crimes of sex trafficking took place, but most of the perpetrators were not prosecuted because no quid pro quo was found. We’ve appealed the decision of non-prosecution, arguing that they should be prosecuted for sexual violence; however, they were eventually prosecuted for only sex trafficking. In 2015, 5 perpetrators were found guilty, and in 2016, ‘Ha-eun’ filed lawsuits for damages against them. In one lawsuit,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d found the defendant to be not liable for damages. However, the Court had found in another lawsuit that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some damages, inciting criticism on the Court’s lack of clarity on the issue.

The case also revealed several flaws of the current system: initial criminal investigations that only focused on sex trafficking, when the facts clearly pointed towards sexual violence against a 13 year old gir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oblems with the current victim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the flaws of the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 **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victim of sex trafficking, contracts HIV, 2017**

In 2016, a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who was pandered by perpetrators through chat apps contracted HIV virus in the course of sex trafficking. This fact was discovered in 2017.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t app – anonymous chats without member registration, short-term storage of the chat records – the police failed in uncover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ople who engaged in sex trafficking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Accordingly, it was never exposed who among the perpetrators contracted HIV virus, which caused panic in the Korean society.

## **2. Characteristics of Crime of Sex Trafficking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Case 1)

In 201\*, child B of 14 years old met her family members during her holidays and played with her cousins through chat apps. Even when she returned home after the end of vacation, messages asking B how she was doing kept arriving. She found them interesting and kept chatting with the sender. The sender faked his age to 20s, and B felt that the age difference was not too large. Some days later, late at night when B's mother was working at night shift and was not home, the perpetrator (who was in his 30s) enticed B that he would drive her on a date, and drove her for a few hours to a place B was unfamiliar with. He said to her that 'I am so tired and need to rest. I will just sleep for a while and won't do anything to harm you. Let's go to a

motel', and at the motel raped her. Because she did not know where she was, she needed to take his car back home. When the perpetrator threw her 20,000 KRW (approx. 20 USD), she received the money. She could not tell her family what happened, and was repeatedly raped by the perpetrator and later became pregnant. B said she would get married with him and have the baby, but the perpetrator informed B's school of her pregnancy, forcing her to stop going school, and forced her to have an abortion. The perpetrator even attempted pandering, telling her to earn her own allowance.

When the perpetrator was put into custody for anothe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 adolescents, B was finally able to get away from him. Nevertheless, B was not fully cognizant of her suffering, and came to us only a year later after a friend persuaded her. She filed a criminal complaint for sexual violence, threat, and assault and battery. However, the police dropped the case for reasons of insufficient evidence. The police, despite B's age of 14, raised questions such as: Why she has decided to report the case only now? Why she has taken the 20,000 KRW from him? If she has taken the money, isn't that prostitution?

#### Case 2)

In 201\*, a 32 years old sex buyer met C, a 17 year old girl, through a chat app called "Ang\_\_", and gave her 120,000 KRW (approx. 120 USD) for sex in his car. The sexual activities were recorded secretly by his black box camera. Afterwards, C regretted what she had done, deleted the app and blocked all calls from him. The perpetrator, however, uploaded C's photos on C's Facebook page, and demanded that she meet him again. Terrified, C deleted her Facebook account and refused to meet him. C threatened her that he would upload C's video on her new Facebook page unless she had sex with him again. C, trembling with fear, asked us for help. On that day, we accompanied the police in arresting the perpetrator. The police had found numerous videos in his black box camera. They were video recordings of sexual activities with 21 different people - 17 videos with children/adolescents, and 4 videos with adults.

The perpetrator in this case was well aware that a child/adolescent would be more perceptible to threats if she was a student. He tended to target underage students for sex trafficking, recorded the sexual activities, and threatened to release the videos. No one except C was able to report the crime.

### **1) The ambiguous line between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As can be observed from the above cases, the line between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is not clearly defined. Nevertheless, law differentiates the act of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and the victims thereof. The court,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follow this distinction provided by law, making it difficult for children/adolesc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receive help. For instanc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adolescents can be reported to Sunflower Children's Centers or the Women and Juvenile Division of the police. Unless caught in a crackdown,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is not viewed as sexual violence. Accordingly, victims are hesitant to report the crime, and may be subject to secondary victimization because they bear the burden in proving the act was not voluntary.

### **2) Tendency to view sex by 'conditional meet-up' arranged through internet sites or chat apps as voluntary**

Adult sex trade is often through brothels. Because brothels have owners, investigators focus investigations on whether the owner committed acts of coercion and force. In contrast, 90% of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are through digital mediums such as internet sites or chat apps. They have no visible owners, and thus police and the prosecutors proceed on the premise that there had been no coercion or force by owners. They presume that most of the victims had voluntarily logged on to the internet sites or apps, created chatting rooms, and proposed the terms of the sex purchase. Therefore, they have participated in sex purchase voluntarily. The prevailing view of the investigatory agencies turns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there exist virtually no regulations for the internet sites or the chat apps which actively

arrange sex trafficking, thereby shifting the whole responsibility of sex trafficking to the children/adolescents. This perception is abused by adult panderers and panderers of similar age who arrange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to adult sex buyers through digital mediums. The 14 year old girl's murder at Gwanak-gu in 2015 is an example.

### **3) Children/adolescents' difficulty to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nd their vulnerability to threats**

Rights of children/adolescents are exercised and protected by legal guardians such as their parents. For them, threats of "I will tell your parents, school, and friends" are terrifying. The most terrifying scenario for children/adolescents involved in a criminal situation is their parents becoming aware of the situation. In order to avoid this scenario, they often tend to rely on panderers or sex buyers, even if they have inflicted harm upon them. For example, they are reluctant to notify situations such a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or pregnancy to their parents. Secondary victimization (stigma, condemnation, etc.) that they may face when they visit hospitals is also something to dread. Accordingly, they often choose to run away, or are forced to rely upon panderers or sex buyers. In turn, the perpetrators are well aware of the mentality of these children/adolescents. Most of children/adolescent victims we discover are suffering under threats by perpetrators that they will tell others, and that the victims will also be prosecuted.

### **4) Grooming**

Sex buyers and panderers approach and groom the children/adolescent victims with friendly words, praises, gifts, allowances, food, and activities such as watching movies together, allowing them to do 'bad things', going out together, and so forth. This enables them to dominate the victims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and use them for crimes. At this stage, the victims confuse the relationship as that of lovers, or is emotionally dependant on the perpetrators and follow their demands. They are hesitant to report the violence even when it worsens, and often do not testify to the perpetrators' existence even when

the victims are caught by the police. The buyers and panderers store the messages and photos that they have received at early grooming stage, and submit them as evidence of loving relationship, thereby evading criminal punishment.

#### 5) Aggravated harm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at a developmental stage often called in Korea as a ‘period of gale and angry waves’. They are often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unstable. They often feel that spontaneous and extreme behaviors are admirable, tend to be self-centered, and do not think of the results or the future when they act. This is why they are deemed to be ‘immature’. At this stage, sexual activities with numerous sex buyers inflict harm on their psychology more acutely than we can imagine. Severe depression, anthropophobia, suicide attempts, alcoholism, and schizophrenia are some of the symptoms. Being subject to the crime of sex trafficking –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in exchange for money – distorts their perception of sexual relationship; ordinary sexual activities are perceived as violent, or violence is perceived as acts of love. This has harmful effect on their future relationships. The child B in the Case 1 above experienced auditory and visual hallucinations, and exhibited violent behavior and refusal to engage in conversations, based on distorted perceptions.

#### 6) Chat apps are safe for sex buyers

Chat apps that ensure complete anonymity, automatic deletion of messages and short term storage of records are very secure for sex buyers and panderers, compared to purchase of sex at brothels with the always-present danger of random crackdowns. Moreover, chat apps are predominantly used by minors, and perpetrators are aware that they are able to buy girls who are amateurs compared to adults, and tend to be vulnerable to threats and never report the crimes by themselves. These chat apps will continue to be popular among these criminals. In June 2017, an active policeman who tried to purchase sex of minors using one of the smartphone apps but was caught by

the police.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much these apps are considered to be safe by the sex buyers.

### **3. Smartphone Applications, Social Media, and Personal Broadcasting that Arrange, Entice, and Enable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 **1) Characteristics of chat apps**

##### **(1) Anonymity**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f the 'chat apps' is that there is no registration process, and people can join the chats simply by providing nickname/gender/age/region. Accordingly, both males and females join the chats anonymously without even providing cell phone numbers, which increases the risk of chats and meet-ups. Because the gender can be set arbitrarily, panderers can pose as children / adolescents, which had indeed been witnessed in numerous occasions.

##### **(2) Adult verification process**

Most of the chat apps that actively facilitate sex trafficking do not have adult verification process. Some applications allow users to only input age of more than 20, but users use nicknames such as '15', '7teen', and 'High School' to show they are children / adolescents, which is used for arranging sex purchase. Some applications allow age input of more than 17, without any adult verification process.

##### **(3) Record of chat history**

These chat apps facilitate sex trafficking/pandering by not storing the chat messages. There is no option to save the messages, and if one leaves the chat room, all chat messages are instantly deleted. This provides privacy and intimacy to each chat room, and is useful for sex buyers/panderers who do not wish to leave any evidence.



## 2) Recent changes in some applications

### (1) Blocking screen capture

More and more chat apps now block screen captures. As a result, it's become more difficult for the children/adolescents to obtain evidence and to report sex buyers/panderers.

### (2) Point system

Most chat apps have a point system, and users need points in order to send messages and to chat. This system is the main monetization venue for the app owners. The application called "8\_\_Talk" not only charges points for making 1:1 chat rooms, but also for each message sent back and forth. The party receiving the messages also receive some of the points, which can be transferred into cash. This induces users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and to make it more provocative. This system is another element within the apps for encouraging sex trafficking.

### (3) Video chat

Some of the chat apps that actively facilitate sex trafficking now allow video chats. When male users use the points to start video chats, some of the points are given to the female users, who can then transfer them to cash. In this way, video chats are used in sex trafficking of children / adolescents.

## 3) Frequent updates

In order to avoid administrative penalties, chat apps often change their names in updates. As a result, an app currently being used may not be searchable on app stores.

## 4) Changes in neologisms

Expressions used in chat apps referring to sex trade are mostly abbreviations and new slangs, and they change constantly. This in part due to the ever-changing online culture, and in part because expressions referring to sex

trade are banned within the apps. ‘Conditional meet-up’, once a common expression, is being phased out. Currently the terms ‘decent’, ‘indecent’, and ‘half-decent’ are in use. ‘Decent’ means ‘paid dates’, ‘indecent’ means sexual intercourse, and ‘half-decent’ which seems refer to other sexual activities. However, one can never know whether ‘decent’ meetings do end with dates and dinners. A new form of sex trafficking being observed with more frequency is payment in exchange for photos and videos. ‘Onple’ is the new term for this. The term is an abbreviation of ‘online play’.

## 5) Change in user base

### (1) Age

Important change in application user base is the age. We are seeing more and more provocative activities of younger users, which is a reflection of how apps are exposing adult contents to children/adolescents without restraint. Recently we’ve witness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the apps, as captured below. While the screen capture only shows the age of the user, we have also s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aging in conversations involving ‘slave’, and so forth. You will also note that the screen capture below shows users looking for young children for sexual reasons.

[In the top photo, chat room in red box states “I am 13 years old”, and is created by account “Toding Choding” (Choding is a sla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the bottom left photo, the user is advertising: “if you have a young daughter or young little sister, I am looking for slaves. Only people who are into Lolita. I am looking for slaves. If you do what you are told, I will give you what you want”]

### (2) ‘mixed ethnicity’

More male users are looking for females of ‘mixed ethnicity’ on chat apps. In response, more female users are emphasizing that they are of ‘mixed ethnicity’. We have not seen non-Koreans using the chat apps, probably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but the recent demand for ‘mixed ethnicity’ can be seen as another phenomenon of male users looking for novel stimulus.

## 6) Social media as a venue for sex trafficking

### (1) Facebook

- Users are using Facebook messages to propose being a sponsor and having conditional meet-ups.
- Facebook users have created accounts suggestive of sex trade, such as 'conditional meet-ups'. Brothel owners have created Facebook accounts to promote their shops.
- Children/adolescents are exposed to advertisements of chat apps on Facebook, thereby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o sex trafficking.

### (2) Instagram

- Instagram users are using hashtags such as 'Sextagram' and 'Off' to post obscene contents or suggest sex purchase.
- Users publishing masturbation videos or photos seem to be mostly individual users. Such contents have several comments saying that they have sent DM (Direct Message) to the person who has published content, and we believe proposals for sex purchase are taking place through DMs.
- 'conditional meet-ups' contents which directly suggest sex purchase seem to be published by brothel operators.

### (3) Twitter

- Numerous tweets on 'conditional meet-ups' and other sexual activities (selling masturbation videos and photos) are being published.
- Search results for 'conditional meet-ups' include many advertisements for brothels.

## 7) Sexy Broadcasting

When one searches 'sexy broadcasting' on internet, several internet sites come up. If the user passes the adult verification process, then registration and watching the broadcastings are free of charge. Sexy 'Broadcasting Jackeys'(BJs) who have been banned from "A\_\_ TV" (most popular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in Korea) are moving to sexy broadcasting services. The

contents can be watched on PC by downloading software, or on smartphones by downloading apps.

These sexy BJs wear revealing clothes because it directly affects number of watchers, 'star balloons'(while the term differs from service to service, the term 'star balloon' is used to denote points that the users can send to the BJs to transfer into cash), and therefore, profit. As the watchers constantly demand more stimulus, unregulated sexy broadcasting services naturally broadcast more and more explicit contents. Some broadcastings require payment before watching, and these tend to be the ones with more explicit contents. Sexy broadcasting services have attracted a large user base because unlike the chat apps, they are free of charge. Also, they are on 24 hours a day. Sexy BJs become more active after 9 o'clock in the evening, in time for the male users coming home from work. During live broadcastings, BJs mention the id of users who have posted comments and sent 'star balloons', and this interactive aspect of the service allows the sex buyers to fulfill their desire.

#### **4. Problems with the Current Victim Support System and Laws on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The so-called 'Ha-eun' tragedy: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finds that a sex offender who had purchased sex from a 13-year old gir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not liable for damages (April, 2016)

##### **1) Background**

In June 2014, a girl who had just turned 13 years, dropped her mother's cell phone while playing with it, and broke the screen. Afraid of being scolded by her mother, she decided to run away, and made a chat room named 'I've run away, need a place to sleep', on a chat app called "Friend \_\_\_\_". Through the app, she met an adult male. Because she had intellectual disabilities she often experienced bullying in school, and because she had no other place to go, she followed the adult male to a motel and was raped. As this was her

first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she was terrified and confused. This made it more difficult for her to decide to return home, and she continued to look for friends through the chat app. She was raped and molested by 6 other adult males. Runaway report had been filed, and she was found after a week. She was not herself by then. Her mother looked at her daughter looking miserable and acting odd, and her heart sank. She took her daughter to a Sunflower Children's Center in Seoul and reported the sexual violence. With attendance of a state-appointed legal counsel, she testified the crime committed against her. After the incident, she felt extremely anxious and confused, and fell into severe depression, and even attempted committing suicide. Her mother had to send her to a psychiatric ward. In an appalling turn of events, she was sexually assaulted by a male care worker within the ward. Her mother reported the worker for sexual violence.

The case proceeded in two prongs; one regarding sexual violence after she had run away, and the other on sexual assault in the psychiatric ward. The criminal investigations on the former changed focus to sex trafficking, rather than sexual violence, because the police found the sexual intercourse to be voluntary and for quid pro quo. This was based on the facts that the child herself created the chat room named 'I've run away, need a place to sleep', and the perpetrators bought her snacks such as tteok-bokki and chicken. Sunflower Children's Center that was providing initial support to the victim stopped, because the crime in question was no longer sexual violence. Fortunately, the case worker helping the victim with counselling referred the case to us.

In December, the cases were concluded one by one. Total of 6 perpetrators were identified, and were initially investigated on charges of sexual violence but later the investigations focused on charges of sex trafficking. By December, the prosecutors have concluded investigations on three perpetrators; only one was charged for the crime of trafficking of sex of children/adolescents, and other two were not charged for reasons of insufficient evidence, because the prosecutors determined that quid pro quo exchange took place. In sum, the prosecutors found that a child who has just turned 13 was not a victim of

sexual violence, because there was no force, and also that she was not even a victim of sex purchase, because she received quid pro quo. We attempted to appeal the non-prosecution decision through state-appointed counsel, but he/she resigned, because under law he/she could not represent the victim of sex trafficking in the capacity of a state-appointed counsel. Our legal support group took the case, and appealed the non-prosecution decision of the two perpetrators, and also represented the victim vis-a-vis other cases of the remaining perpetrators.

## 2) History

The case is representative of several problems surround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adolescents – how the society perceives sex trafficking of children/adolescents, and the failings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and law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for such crimes.

## 3) Revealed problems

### (1) Arbitrary, indifferent, and unprofessional criminal investigation

Why were the crimes investigated for sex trafficking, and not sexual violence?

- The investigators were indifferent to the fact that the child's age was 13, had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at the crimes were committed within just 1 week of her running away from home. Instead of conducting victim-centered investigations, the investigations revolved around each perpetrator's case, without taking the overall picture into account.
- There had been no consideration of the age and the disability in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law on voluntariness.
- The fact that the child herself made the chat room on the app was perceived as the proposal for voluntary sex trafficking (thus provisions on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in sex trade were applied to the case)
- The fact that perpetrators bought her snacks such as tteok-bokki and chicken, and paid for the motel was perceived as quid pro quo in sex purchase.
- In cases where perpetrators took the victim's money to pay for the motel or

did not give her any food, the prosecutors determined that since there was no quid pro quo, there is no crime of sex trafficking to be charged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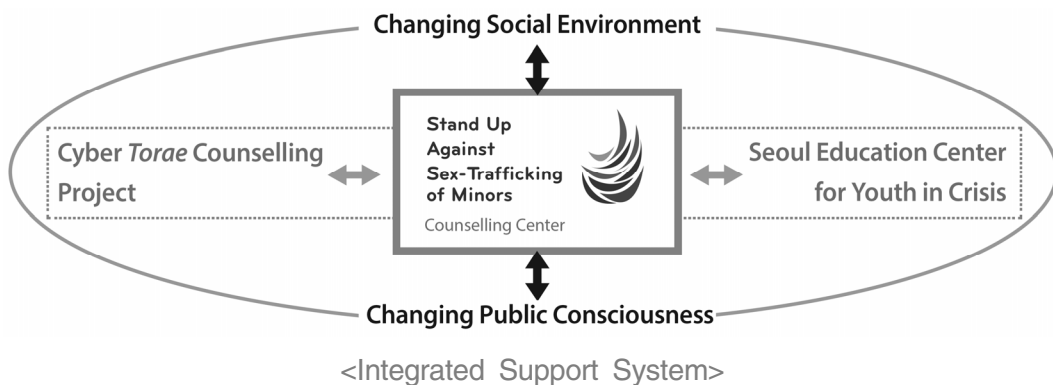
- (2) Sunflower Children's Center, which provided initial support to the investigations, stopped all support when it was determined that this was a case of sex trade – the problem of the current victim support system that differentiates between sexua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eve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 (3) The system of state-appointed legal counsels, who are only provided to children/adolesc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 (4) The non-existence of dedicated support system for crime of sex trafficking against children/adolescents (no dedicated office at counselling centers,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 (5) Sentencing practice too weak (fines, suspension of sentence)
  - General perception is that the victims are often the cause. The state seemingly has accepted the social consensus that existence of adult sex buyers is unavoidable, and thus children / adolescents should be the target for regulation.
  - Mild sentencing practice does not have preventive effect.
- (6) Court's decision that found that even a criminally guilty perpetrator is not liable for tort damages:

The court first determined that while the victim seems to have intellectual disabilities, she may still exercise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court found, the child is categorized under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 children /adolescents who hav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sex trade. Under the Act, they are differentiated from 'victimized children or juveniles'. Sex buyers in voluntary sex trade with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are punished under the Act not because of individual harm inflicted upon the seller, but because of violation of social norm. Following this logic,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ex buyer is not liable for damages claimed by the victim.

## 5.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the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Below, we will lay out an overview of our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children/adolescent victims of sex trafficking. To protect and support children/adolescent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to help them enter into healthy adulthood requires many resources. All support systems need to be systematically connected and centered around the recipient. Each process - victim identification; direct support (legal, medical, psychological, housing, education, and work); and education-need to be comprehensively designed within the support system.



Integrated support system of the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does not yet include direct support for housing, education and work – existing resources are utilized for these areas – but centers around direct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recognizing that these areas urgently need to leverage professional resources.

Our integrated support system include Cyber Peer Counseling, Seoul Education Center for Adolescents at Risk, and Counselling Center. The Cyber Peer Counseling is conducted online (online chats, apps, message board in the



homepage, etc.). As sex trafficking against children/adolescents are increasingly occurring online, the traditional offline outreach has limitations in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of the victims. As such, we conduct both online and offline outreach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recipient's wants.

Victims that are identified through several venues such as Cyber Peer Counseling go to in-person counseling sessions, receive direct support and participate in education camps. First, our Counseling Center operates a support group of approx. 60 professionals (attorneys, doctors, therapists) in order to provide direct support in legal/medical/psychological areas. In coordination with the legal support group, counselors refer the case to lawyers within the legal support group for filing criminal complaint for and representing the victims in court, and follow up with case monitoring. We also actively utilize petitions, letters, and memorandums i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stages. We also ask for professional advice for diseases contra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sexual abuse, and accompany the victims to medical institutions of the medical support group. This prevents possible secondary victimization that may occur in medical institutions. Also, victims often experience overlapping vulnerabilities that are not limited to rape, forced harrassment, and imprisonment, but include lack of family, neglect, abuse, bullying, schoo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address these complex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before the victims enter adulthood, which can be achieved by continuous 1:1 therapy sessions. Psychological support group act as supporters of the victims as well as professional therapists who aid the victims in reinterpreting their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order to exit sex trade and plan for the future. Counselors coordinate the overall process, as well as directly intervening in what they deem to be emergency cases regarding the victim's relationships – parents, teachers, panderers, buyers, boyfriend, and peer groups. In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cedures, all significant incidents occurring to the client are put to case study meetings, and solutions are discussed with relevant professionals. Each support group also participate as lecturers in Adolescent Growth Camp, a 5 day/40 hour program by Seoul Education Center for

Adolescents at Risk, participated by both counselors and children / adolescents. The children / adolescent participants are able to experience healthy relationships with the supportive adults, through forming rapport with the counselors and participating in education by legal/medical/psychological support groups. The camp enables them to positively redefine their identity and value.

## **6. Case Studies of Integrated Support by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The client, 17 years in 201X, ran away from home upon enticement from the panderer she got to know through a chat app. She was imprisoned in his home, and suffered multiple sex trafficking and rapes. A fight between the sex buyer and panderer resulted in being reported to the police. While the client and the panderer was being taken to the police station, they were not separated and the perpetrator coerced and threatened the victim to testify that she was in a loving relationship with the panderer and that sex trade was voluntary. She testified accordingly, was investigated as a suspect, and the police report wrote that she had voluntarily sold sex. When she returned home, she told what happened to her mother. The mother requested the Cyber Peer Counseling for advice on the current police investigations, and also for legal support. The Cyber Peer Counseling and the Counseling Center conducted in-person interviews together. At the interview, the client exhibited severe emotional anxiety due to repeated damage from panders and sex buyers. The mother also was suffering from the shock. We decided to separate the client and the mother, and persuaded the client to participate in the Adolescent Growth Camp that had begun at the time. During the camp, the client was able to have individual counseling sessions every day, where she could tell her story and be understood. She also participated in various programs including MMPI test, and spent her time well with her peers and adults who supported her.

## **7. Measures to Prevent and Block Cyber Sex Trafficking (Focusing on Children / Adolescent Victims of Sex Trafficking)**

### **1) Enabling environment of cyber sex trafficking must be regulated**

Smartphone chat apps have become a major route to initially induce children and adolescents to sexual violence and abuse. We are at a stage where such apps can no longer be justified under the pretext of freedom of business. However, there exist no laws or regulations to regulate or restrict chat apps, internet communities and chatting services. The swift progress in IT has transferred enabling environment for sex trafficking from internet chats to smartphone chat apps. It is now migrating to interactive video chats and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s. In order to regulate the ever-changing environment of enticing, arranging, and enabling cyber sex trafficking, we must:

First, implement legislations that can broadly regulate and penalize cyber sex trafficking. Current legislations allow monitoring or reporting obscene sites or materials to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hich then deliberates on the case. The Commission can render decisions to dismiss the complaint or to order the closure of the site. This method is focused on obscene materials, and reporting or regulating cyber sex trafficking is limited. Even when the site enabling cyber sex trafficking is blocked, the information is not transmitted to the police and the owner is not prosecuted. The owner of the blocked page can simply change the IP address from the blocked one, and the panderers and buyers can come back. New legislation on this issue must be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 operators of chat sites, chat apps, and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play substantive roles in arranging and inducing sex trafficking. Therefore, new legislation would include meaningful penalties for them. It would also provide measures to close down sites, apps, and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s that enable cyber sex trafficking, and to require police crackdown and investigations, resulting in criminal punishment for sex buyers and panderers.

Second, a dedicated institution must be established that would implement legislations to regulate cyber sex trafficking, and establish and carry out mid-term and long-term policy measures thereon. Cyber sex trafficking market may well grow larger than that of the real-lif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more susceptible to cyber environment, will be more at risk. Therefore, a dedicated institution, which would include professional IT resources to effectively establish online safeguards, needs to be established.

Third, we need to support and develop the current monitoring work of the nonprofit sector,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monitor and report ever-evolving cyber sex trafficking. Stable organizational support would be preferable over short-term support of individual projects.

Fourth, a powerfu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need to be implemented in tandem in order to root out cyber sex trafficking targeted towards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UK's new 'grooming law', and the Netherland's project of 'Sweetie, the fake 10-year-old girl' are noteworthy in that regard. New legislation may include operators of chatting sites or apps in the scope of people mandated to report pandering or information regarding sex trafficking. It may also leverage the CSR of major telecommunications operator businesses to help prevent cyber sex trafficking.

**2) The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at divides victim status on the arbitrary standard of voluntary/forced needs to be amended**

The current Act confers responsibility to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ore than 13 years old based on their consent of sex purchase. This would not achieve the objective of restricting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instead would encourage it. Therefore, as a priority, the Act must be amended. In order to stop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ore stringent punishment of panderers and buyers need to be implemented.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if the victims have met the buyer through 'conditional meet-ups', where the panderers stay invisible, they are deemed to

hav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ex purchase, and categorized into “children or juveniles involved in prostitution” and given protective dispositions. This allows the buyers to threaten the victims that ‘you will be punished too’ and deters the victims from reporting the crime. Therefore, the Act must be amended to assume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ima facie victims of sexual abuse, and to lay the responsibility on the adult perpetrators. Arrest should be the principle in criminal investigations of these crimes, which would have intimidating effect on the buyers when engaging in criminal activitie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should not be limited to crimes committed on children less than 13 years old, but should be expanded to sex crimes on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Also, arrangement of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held liable for damages incurred to the victims.

Currently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posed by legislator Nam, In-soon and Kim, Sam-hwa) has passe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now being deliberated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act as a stimulus for the bill in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Session 2

토론

좌장 강지원 변호사

(現 푸르메재단 이사장 /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            |                     |
|------------|---------------------|
| 김현아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
|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강정은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
| 안수경 위원장    |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
| 이현숙 대표     | (탁틴내일(ECPAT Korea)) |
| 조주은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 이금순 과장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 신희영 검사     | (법무부 형사법제과)         |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김현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발제자들의 발제문들을 보니 영국 사례의 발표문에서 언급된 12세의 수잔에게 일어난 일도, 조진경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사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겪은 일도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의 특징이 반영된 우리 법의 개정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김삼화 의원 및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며,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세미나를 통해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

명한 바 있습니다.<sup>1)</sup>

스웨덴에서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로 첫째,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가 취약한 측이고 성 구매자에 의해 착취를 당하기 때문이고, 둘째,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개념을 확고히 하고 '보호의 원칙'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도 역시 처벌받는다 인식하여 성구매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야만 이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중심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 2.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개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앱과 웹사이트를 규제하고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만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은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입법 방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학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 22.6%에서 2017년 37.2%로 증가하였고, 고학년(4-6년) 초등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은 올해 82.6%이며, 특히 스마트폰 보유율이 74.2%에 달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휴대폰 보급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처음으로 9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96.5%이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89.5% → 2017년 93.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2)</sup>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7. 8. 1.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 인권위,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견 표명 -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STAT Report 2017. 12. 15 / Vol. 17-23, 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3쪽 참조.

채팅’ 27.2%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라는 의견이 8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10대를 유혹하는 어플까지 생겨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 상당수가 노출돼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만남을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플 개발자,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sup>3)</sup>

특히 조진경 대표님께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 중 하나로 그루밍 수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한 번이라도 접근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한 판결에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하여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sup>4)</sup> 한국에서도 이처럼 그루밍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법도 그루밍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2017. 10.), 128쪽 참조; 자세한 통계는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참조.

4) <https://news.v.daum.net/v/20180716103345122?f=m>, 나이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1) –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강화

- 우리나라는 유해환경의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청소년 기본법」, 200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또한 2004년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 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을 명시하고, 같은 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법 제정 이래 최초로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
- ※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학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8항
-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다종다양한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고, ICT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매체이용의 개인화 경향과 역기능 문제가 심화됨. 청소년을 둘러싼 주요 환경 체계인 가족, 지역사회 뿐 아니라 4차 산업 시대 대비 사이버(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광

1) 김지연 외(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범위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6~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2.8%에 달함.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12분(음성통화 제외)으로 이는 전체 연령층 가운데 20대 다음으로 많은 수준임(방송통신위원회,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2.4%로 이들 중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경험률은 여학생(25.2%)이 남학생(2.9%)보다 약 8배 이상 높음. 또한 여학생은 성폭력 가해자로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여 6.8%, 남 0.9%) 또는 모르는 사람(여 23.9%, 남 6.6%)을 지목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여성가족부, 2016).
- ※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비율은 스마트폰 25.4%, 가정 내 컴퓨터 23.2%, 학교 컴퓨터 51.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
- ※ 특히 “조건만남 매신저 또는 채팅 앱 이용 시, 나이 확인 절차가 작동했다”는 응답률은 전체 초·중·고교 응답자의 31.1%에 불과함. 여학생의 경우 “나이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52.4%)에 달하여 아동·청소년을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조차 미흡한 실정임.
- 특히 랜덤채팅(random chatting)의 음란정보 유통실태를 보면 여자청소년이 송신하는 사진 파일의 61.9%가 성인 남성에게 전달되고, 수신 사진파일의 43%가 성인남성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박광선, 2016). 이는 섹스팅(sexting), 그루밍(grooming)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익명성의 부작용을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아동·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상물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섹스팅 규제가 필요하며 「민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내 관련 규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이를 근거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단속,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함.
- 이와 함께 규제·단속만으로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랜덤채팅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기술적인 조치(성인인증 포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플랫폼을 정부가 개발, 적용을 의무화하면 사업주 또는 정보제공자가 운영 내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도 병행해야 함.

- ※ 영국 온라인데이트협회(ODA, online dating association)는 eHarmony, FreeDating, The Dating Lab 등 유명 회사가 동참하여 설립한 온라인데이트서비스 자율규제 기구로 표준운영규정(code of practice)을 마련, 자발적으로 준수함. 특히 운영규정 내 ‘사용자 보호’ 부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금지, 청소년 이용제한을 위한 적절한 단계(조치)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섹스팅(sexting) 관련 주요국의 규제 사례]

#### <호주>

2014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섹스팅(sexting)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미성년자 기소 면제 조항 포함**. 전승한 이미지가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담은 사진이거나 타인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 면제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섹스팅 관련 법안을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의회에 상정

#### <영국>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와 영상 제작, 다운로드, 저장 행위를 포함하여 **청소년 간 성적 이미지 또는 영상 전달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

#### <프랑스>

sexting, revenge porn(타인의 사적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 등 사회연결망에 유포하는 행위), sextorsion(상대방의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포하는 행위)을 위법행위로 처벌함. 특히 타인의 사적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형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처벌(징역 5년, 75,000유로 벌금형)**. 특히 불특정인을 상대로 webcam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 기중처벌 대상임(징역 7년, 100,000유로 벌금형).

- ※ 프랑스는 민법에 영상물에 대한 권리(droit à l'image)를 포함하며,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진 및 영상의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

##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강화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위기청소년(youth at-risk) 보호체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위기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항
- 2017년 기준 16개 시·도 및 208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자치단체 수 대비 설치율이 90%를 넘음. 이제 ‘위기청소년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는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 지원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현재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주요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해 파악되는 요보호아동 및 위기청소년은 약 67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까지 포함하면 위기청소년 규모는 약 160만 명으로 추산됨. 이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의 약 17%에 달하는 규모임(김지연 외, 2015).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빈곤, 가출, 학교 밖, 보호자(친권자)의 지도 감독과 돌봄 부재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기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발견, 보호, 탈위기, 회복과 적응지원이 윈스톱으로 제공되어야 함.
- 특히 안전망 구축 뿐 아니라 기존의 안전망이 최소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위기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지속인 환류(feedback)가 필요함. 예로, 청소년 성매매(juvenile prostitute)라는 용어 사용, 성착취에 있어 피해·대상아동을 구분하여 처우하는 것은 조기발견, 구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요구됨.
- ※ 2004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조약 제1688호)” 참조 필요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차원에서 “청소년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반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확충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래의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함.
- CYS-Net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함. 다만 CYS-Net에서 다루는 문제(위기)유형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진로(약 25%), 대인관계(약



18%) 등 성착취 사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위기수준이 낮은 문제의 비중이 높고, 지원내용도 상담 및 정서지원에 집중됨(약 61%).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를 포함한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권리 구제와 옹호, 진로·자립지원 등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보호범위(coverage)를 확대해야 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비행이 아닌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접근권과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아동·청소년성매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저 이제 처벌 받나요?”

성착취 피해로 성매수자에게 임신하여 15세에 출산하고, 갓 돌이 된 아이를 조그마한 등에 들쳐 업고 온 주연이(가명, 당시 16세)가 변호사를 만난 날, 처음으로 건넨 말이다. 자신의 진술 외에는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던 날이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했던 피고인들을 면발치서 발견한 주연이는 법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는 한참동안 울었다. 주연이는 법정에서 5시간이 넘도록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 왜 (감금된) 모텔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 했냐”와 같은 질문을 받아야만 했다.<sup>1)</sup> 십대성매매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수사과정에서 성폭력에서 성매매로 인지되는 순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이 떨어져 나간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재판을 받기도 한다. 무수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상담소, 쉼터는 모두 외면한다. 한 해 약 27만 명<sup>2)</sup>으로 추산되는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절반은 생계를 위한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 본 토론은 이러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현실을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본 토론자가 직접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던 사례이다. 성매매를 강요했던 피고인 1은 징역 4년, 피고인 2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 확정되었다. 배상명령으로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되었다.

2) 이투데이, “여가부, 가출청소년 27만명 추산…청소년쉼터로 연간 3만명 자립 돕는다.”, 2017. 10. 23.자 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2600#csidxf54b645b18bcb67bf312172d142a4ed>

## 1. ‘성착취 피해자’로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up>3)</sup>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의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34조는 당사국의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총회는 2000. 5. 25. 성착취 피해자 중 여자 아동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매매 아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sup>4)</sup>를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하였다.<sup>5)</sup>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찾아내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로 본다.<sup>6)</sup>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3호는 성적학대와 착취를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7)</sup> 유엔이 채택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up>8)</sup>는 성매매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3) 우리나라 발효일 1991. 12. 20. (조약 제1072호)

4) 우리나라 발효일 2004. 10. 24. (조약 제1688호)

5) 원혜옥,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국제인권법 제8호(2005), 48~49쪽 참조

6) 조진경·김진·김현아·박혜란,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2017. 10.), 35쪽 참조,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Sex Sector: The Economic and Social Bases of Prostitution in Southeast Asia(1998), pp. 177

7) CRC/C/GC/13, para.25.,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결의하여 임명한 ‘아동의 매매와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은 당사국에게 “모든 형태의 아동 매매와 성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개정함으로써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법이 성학대 및 성착취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다.<sup>9)</sup> 이와 같이 유엔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2004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제2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총 4차례 받았다.<sup>10)</sup> 다가오는 2019년에는 제5·6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3. 1. 15. 채택된 대한민국에 대한 제2차 심의 최종권해에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아동 성착취에 관한) 아동친화적인 방법에 대한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의 교육·훈련, 성착취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재통합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성매매 권유자,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sup>11)</sup>.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8.

8) 우리나라 발효일 2015. 12. 5. (조약 제2259호)

9) A/HRC/31/58, para.82., 참고로 현재 유엔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 방문을 요청한 상태이다.

[[https://spinternet.ohchr.org/\\_Layouts/SpecialProceduresInternet/ViewCountryVisits.aspx?Lang=en](https://spinternet.ohchr.org/_Layouts/SpecialProceduresInternet/ViewCountryVisits.aspx?Lang=en) (2018. 8. 12. 최종 확인)].

10) 협약 제1·2선택의정서는 최초 국가보고서만 별도로 제출하며, 이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1차 심의(1996. 1.), 제2차 심의(2003. 1.), 제3-4차 심의(2011. 9.)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제1차 심의(2008. 5.)

5. 23.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2008. 6. 6. “①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어떤 범죄의 아동피해자도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② 아동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리 기능의 개선을 위해 소관 당국에 충분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하고, 성매매범죄 아동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③ 아동피해자의 개인적인 이익이 결부된 소송절차의 경우, 이들의 견해와 욕구 및 우려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판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택의정서 조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50여개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sup>12)</sup>

2011.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심의 결과,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인수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며, 대한민국 국내법이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된 범죄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sup>13)</sup>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여년이 되었지만 십대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쟁점으로 반복하여 수차례 권고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한민국이 2017. 12.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만 보더라도, 국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성폭력을 구분하고 있다. 성매매 아동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만, 국가는 마치 성매매 아동을 성폭력·성범죄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차별 없이 지원하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sup>14)</sup>

발제자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부과 받아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 ② 피해

11) CRC/C/15/Add.197, para.55.

12) CRC/C/OPSC/KOR/CO/1

13) CRC/C/KOR/CO/3-4, paras. 72-77.

1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2017), 54~57쪽 참조

자로 규율되지 않는 대상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사 선임에서 배제된다.<sup>15)</sup> ③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아동에게 접근한 다음 아동을 수단으로 성구매자 등을 단속하고 있었다. 심지어 수사에 협조한 아동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경찰은 단속을 빌미로 아동을 성폭력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④ 법원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며 대상아동·청소년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sup>17)</sup> ⑤ 대상아동·청소년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다.<sup>18)</sup> ⑥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수사과정과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처벌받을까 두려워 위축되고 자신의 욕구와 견해를 표시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겨우 표현된 견해는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⑦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을 접하는 변호사와 경찰, 검사, 판사 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은 전무하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십대성매매 현장은 제자리걸음이다.

### 3. 국제인권규범을 실천하는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하여 2017. 8. 1. 국회의원회의장에 십대성매매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삼화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 2017. 2. 13., 2016. 8. 8.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표명을 하였다. (1) 십대성매수범죄 피해자들이 소년재판을 받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분명히 함), (2) 십대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다.<sup>19)</sup>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호 나목

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6. 10.), 95~96쪽 참조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228013 판결(이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33473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101852 판결 참조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외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그 배상청구권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부대(附帶)하여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법원실무제요 형사[ II ], 438 쪽, 법원행정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19)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활동/소식’ - ‘보도자료’,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

고 권고 대상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 대응 등 인권옹호를 담당하는 법무부를 소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4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린 권고를 적극 활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sup>20)</sup>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십대성매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국제인권규범 이행의 핵심 의무자임에도 역할을 간과하고,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회 내에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조차 없다. 국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이행을 위해 즉시 입법활동에 착수하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해야 한다. 성매수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십대성매매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착취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ze=10&boardtypeid=24&boardid=7601443

20)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2017. 8.), 70쪽



#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 한국YWCA를 중심으로 -

##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안수경 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 1. 여성단체로서의 한국YWCA

한국YWCA는 현존하는 여성 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96년의 여성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1953년 가족법운동을 이끌었고, 1970년대에는 근로여성들의 노동 착취에 대항하여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인권문제를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0년 지방분권 이후 끊임없이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YWCA 목적문에 나타난 ‘정의·평화·생명운동의 지향’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중 특히 여성단체인 한국YWCA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할 활동을 제안한다.

###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1) 전문가와 결합된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전개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사이버 영역 증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는 다

양해지고 세분화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결합된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YWCA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주로 술·담배판매 감시, 노래방(청소년 출입·고용), 환경보호 등의 활동으로 감시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YWCA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 당사자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일상에서부터 유입되는 청소년 성매매환경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권고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청,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예방, 감시,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YWCA는 지역에 52개 지부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 부속시설이 있다. 한국YWCA는 자체 지역조직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성착취 피해 아동이 조사 과정에서 쉽거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우가 드물다. 법 집행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로 연결해주어 피해 아동의 자립과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 3) YWCA 청소년 교육 및 공동행동캠페인 실시

아동·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성착취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성매매환경에 유입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한 청소년이 성착취에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 중 경제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고자 한다. 매년 YWCA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 유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친구들이 유해한 환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YWCA 청소년 교육 실시 이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캠페인을 실시 할 것이다. 공동행동캠페인은 지역별로 청소년어울림 마당 또는 청소년주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부스운영, 거리캠페인, 피켓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슈를 확산시킬 것이다.

#### 4) 이슈를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확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피해 청소년을 구분지어 피해 청소년들이 2차 피해 및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나 성매매 과정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라 비난하기에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반인권적 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법률안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모두 성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목격 시 대응 방법 등을 사회 전반에 퍼뜨려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 3. 외국의 사례 연구와 실행을 위한 노력

해외 사례를 보면 시민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 ‘차일드 후드 브라질’은 트럭을 통한 성착취 및 인신매매에 착안하여 바른길 프로

그램을 시작했다. 트럭 운송업체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인신매매 근절에 힘썼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법 집행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가고 트럭 운전 시 라디오를 주로 듣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라디오 광고 및 라디오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시민 인식개선 활동을 펼쳤다.

그 외 영국 내 취약 아동 권리 보호 단체인 '바나도스'는 나이트워치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 경제 활동의 주체인 택시기사, 호텔 및 바 종업원, 경비업 종사자 등에게 아동성착취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국내 시민 단체와 정부는 이러한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기획 및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성착취요 인권침해로 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학대와 성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잘못된 성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가족의 지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없는 성착취로 고통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성적 동의연령 상향,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위장 수사 도입,  
기업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ECPAT KOREA)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착취 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 연령도 낮아져 초등학교 피해자들도 자주 만납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이동이 자유로우며 늦은 시간까지도 시간을 보낼 곳이 많아 온라인에서 시작된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들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아동 성착취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발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동 성착취 근절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 성적 동의연령(의제강간) 상향

성적 동의 연령을 18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라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루밍이 수반되는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저항 없이 동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착취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학대자와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해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은 폭행 협박이 있거나 위계 위력이 있어야 성폭력으로 보며,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성인 가해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대등하지 않았다면 폭력이며 판단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래 전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불리는 성적 동의연령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로

스웨덴은 이미 노르딕법 시행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발제에서 언급되었듯이 아동조차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강간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과 무기력함 등 복합적인 마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던 아이는 밥을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인과 메신저로 만나 성폭력 당한 여중생은 가해자편에서 범행을 돕고 돈을 받은 친구가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나눠준 돈 때문에 경찰에서 성폭력이 아니라고 의심받았습니다. 성매매를 이유로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으로 보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보호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 위장수사 도입

2013년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방안의 하나로 유도수사 법제화를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위장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늦습니다. 위장수사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채팅하는 상대방이 아이가 아니라 경찰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에게 함부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는 성적 목적의 아동 온라인 그루밍 모델 법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특정하는 법, 온라인 그루밍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을 만날 목적이 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범죄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루밍의 온상인 채팅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진경 대표의 발제 중에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하고 대화의 상대방에게 그 비용이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인전화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아이디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청소년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은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 고시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란사로테 협약 가입 및 비준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란사로테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약은 학대와 착취의 예방,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국가적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의 장려를 통해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7년 채택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증가와 내재된 위험에 대해 말하며 성적 목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제의를 독립적 범죄로 확립하였습니다. ‘그루밍’ 문제를 국제법에서 최초로 구현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폰을 이용하는 방식인 아동을 그루밍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수사와 같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의 기소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4조에서는 각국이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사를 시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제36조에는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아동 권리와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아동 성범죄자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그도 모자라 아동도 상업적,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화와 산업이 아동의 피해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의 온상임을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범죄 가담자로 보는 법등을 근거로 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업소 등이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다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법행위로 걸려도 벌금 조금 내고,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업주를 바꾸어 유사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산업은 근절되기 어렵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 ② 아동 성범죄자 계정 차단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채팅 어플에 아동 성범죄자의 계정을 차단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합니다. 2012년 뉴욕 법무장관과 협약한 비디오 게임회사에서 뉴욕주에 있는 3,500여명의 등록된 성범죄자의 계정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와 연결된 계정을 차단하는 ‘게임오버작전’에 동의한 기업에는 엑스박스 라이브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소유한 소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 ③ 신고 활성화

온라인에서 그루밍, 아동성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자는 문제 계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정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Session 2

###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조주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제정, 2000. 7. 1. 시행)이 제정되었다. 당시 동 법이 제정될 당시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동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이 9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9년에 11차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전부개정, 2010. 1. 1. 시행)로 법률제명이 바뀌게 되었다. 바뀐 제명 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은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을 규정하여 제26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27조(소년부 송치), 제28조(보호처분), 제29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제30조(보호시설), 제31조(상담시설), 제32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의 목적

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되고, 성매매라는 성착취의 피해가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구제는 사라지게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32차 개정(2018. 3. 13. 개정, 2018. 9. 14. 시행)되었다. 제18대 국회(2008~2012)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총 63건이 제안되었으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한건도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법안내용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제19대 국회(2012~2016)에 와서는 전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지어 규정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관련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두건이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2016~2020)에서도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건이 발의되었고, 두건의 법안은 김상희 의원안<sup>1)</sup>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2018. 2. 21.)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표>와 같다. 향후 ‘상임위 중심주의’가 지켜져서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교육·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7호).

〈표〉 제20대 국회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지위 부여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자       | 의안번호<br>(발의연월일)           | 법률의 주요내용  | 처리상태   |
|-----------|---------------------------|---|--|
| 남인순<br>의원 | 2001478<br>(2016. 8. 8.)  |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여가위<br>법안심사<br>소위 통과<br>(2018. 2. 21.) 후<br>법사위 계류 중 |
| 김삼화<br>의원 | 2005598<br>(2017. 2. 13.)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이금순 과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Session 2  
토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신희영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 기관 소개

1.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2. 국회입법조사처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국여성변호사회
5. 사단법인 두루
6. 한국YWCA연합회
7. 탁틴내일(ECPAT Korea)
8. 십대여성인권센터





##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016년 9월에 창립하여, 아동학대·여성폭력 범죄 예방 및 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권미혁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으며, 12명의 국회의원(정회원 10명, 준회원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동·여성인권정책 포럼은 현 정부의 아동·여성정책추진체계를 검토해 아동·여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성평등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여성, 인권 정책 및 제도 분석을 위한 현장소통
-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법안 발의
-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평등 정책, 아동·여성의 권리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및 향후 아동·여성·인권 관련 사회, 경제 환경 등 분석
-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면담을 통한 실태 파악
- 현 정부의 아동·여성·인권 정책추진체계 분석
- 관련법 개정과 제정 및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20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할 주요 아동 및 여성정책과제 개발

활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등 인권실태 통계자료 및 선행문헌 조사
- 정부의 아동 및 여성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현행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관련법 분석
-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청취
- 외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등 해외사례 조사
- 필요시 외국의 아동·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스템 현장 조사 및 견학



##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NARS)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독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1월 6일에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입니다. 「국회법」 제22조의3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되었고,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법」도 제정되었습니다.

-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업무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둘째,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또는 미래에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조사·분석한 연구조사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지원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기관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회가 사회담론을 주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실(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 1관(기획관리관), 2심의관(정치행정조사심의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3실, 14개 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내 유일한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은 주요 국가정책 수립과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크게 활동·참여연구, 보호·복지연구, 자립·역량연구, 통계·패널연구 등 4가지 분야의 청소년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참여연구는 ▲청소년활동진흥관련 연구 ▲청소년 참여 관련 연구 ▲건강 및 스포츠 관련 연구 ▲문화, 예술, 동아리, 정보화 관련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복지연구는 ▲생존·발달·안전·보건 관련 연구 ▲복지·권리 관련 연구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자활 관련 연구 ▲사회환경(유익환경, 유해환경) 관련 연구 등의 주제로 세분화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역량연구는 ▲자립 및 역량 개발 관련 연구 ▲취업, 창업, 진로지도 관련 연구 ▲청년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패널연구는 ▲패널조사 연구 ▲지표조사 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연구 ▲국가승인통계 관련 업무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시스템을 갖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5개의 부설센터를 운영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별로 ▲활동·참여연구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년 여성가족부 지정) ▲보호·복지연구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2014년 교육부 지정),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2018년 교육부 지정) ▲자립·역량연구실 청년연구센터(2017년) ▲통계·패널연구실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2017년)를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1997년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주도적으로 발족했습니다. 현재 미국,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10개국 15개 기관 1개 국제학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정책 관련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Tel. 044-415-2114 Fax. 044-415-2369 www.nypi.re.kr



NYPI 홈페이지  
www.nyp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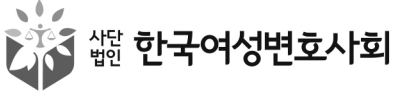
NYPI 페이스북  
www.facebook.com/nypipage



NYPI 모바일앱  
m.nypi.re.kr



WARDY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wardy.nypi.re.kr



## 한국여성변호사회

설립 : 1991년

### 목적

1.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2.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 정책 및 제도의 개발과 건의
3.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교류 및 복지 증진
4. 회원의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5.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6. 법률문화의 발전 및 국제적 교류
7.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지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된 이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변호사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 1. 공익사업의 지속 및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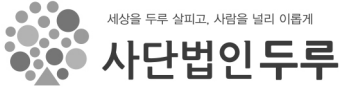
아동학대사건 전담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예방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폭력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을 지원해왔고, 이주노동자, 노인, 위기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및 제도 개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현행 법제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3. 여성변호사의 전문성 고양 및 업무영역 확대

여성변호사들에게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여성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분야와 정계 진출확대를 위하여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여성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유)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두루는 법률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입법지원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통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두루’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인권 : 아동·청소년의 권익옹호를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연구 및 입법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 장애 인권 :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의 사회적경제 지원단체와 협업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대한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인권 : 이주민과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NGO와 함께 입법운동 및 법률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NGO 및 국제기구의 설립·운영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두루의 각 분야별 공익활동 사례   |   |
|---|---|
| <b>[장애 인권]</b><br>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차별구제소송<br>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br>인권침해 시설인 인강재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 및 법률자문<br>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수행 등 | <b>[아동·청소년 인권]</b><br>아동학대, 성폭력·성매매, 소년보호사건 지원<br>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br>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지원<br>국가인권위 아동·청소년 인권정책모니터링 자문<br>미혼모자시설 법률교육 등 |
| <b>[사회적경제]</b><br>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지원<br>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등과 협력하여 성수동 소셜벤처 법률지원<br>한국사회투자 임팩트금융 관련 법률지원<br>협동조합 제도개선 연구 등                | <b>[국제 인권]</b><br>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br>국제 NGO의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자문<br>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소송 지원<br>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br>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 연구 등    |
| <b>[일반 공익법활동]</b><br>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등 헌법소원, 송전선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지뢰피해자를 위한 행정소송,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고소송 등                                    |   |

홈페이지 <http://duroo.org/>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uroo2014/>



## 한국YWCA연합회

###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보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개

한국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22년 창립되었으며, 국내 52개 지역에서 국내 9만 여 명의 회원들이 섬김, 나눔, 살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여성단체로서, 120개 회원국으로 조직된 세계YWCA에 속해있는 국제단체입니다.

### 활동내용

한국YWCA는 1922년 창립되어 올해로 96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단체로서, 호주제 폐지, 여성폭력예방,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 지지 활동 등의 여성의 인권 강화 운동, 아나바다 활동을 필두로 한 환경운동, 소비자 권리 운동, 사회복지 사업,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시민 운동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돌봄노동의 사회화 운동, 여성 지도력 모델 발굴과 시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결혼이민여성과 탈북민을 위한 사회적응과 직종 개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확산, 탈핵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2층 한국YWCA연합회 (우: 04538)

TEL : 02-774-9702-7 / FAX: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E-MAIL: [koreaywca@ywca.or.kr](mailto:koreaywca@ywca.or.kr)



〈2018~2019 한국YWCA 정책〉

**주 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탈핵으로 생명평화, 성평등으로 정의를 -

**4대 추진과제**

**탈핵생명운동**

탈핵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 지역 에너지 전환과 자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폐쇄
-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전면 재수립 촉구
- 식품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성평등운동**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선거와 정책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평화통일운동**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 사회 만들기

- 평화교육 확산
- 사회문화 교류 확대
- 대북지원 확대

**청(소)년운동**

청소년이  
삶의 주제로 서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 YWCA 청(소)년 주체성 확립
- 회원YWCA의 청(소)년운동 환경 기반 강화
- 청(소)년 이슈 정책 발굴과 대응
-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강화

**주 영 정 책**

- 회원YWCA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회원YWCA 핵심지도력 확보 및 역량강화
- 회원YWCA 회원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
- 회원YWCA 행정기반 강화
- YWCA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부속시설 및 외부 지원사업 운영



## 탁틴내일(ECPAT Korea)

탁틴내일(ECPAT Korea)는 1995년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구현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함을 목표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23년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구출부터 소외되고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 배움터 마련, 사회적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등 탁틴내일(ECPAT Korea)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인식재고와 법·제도 개선을 포괄적으로 견인해왔습니다.

특히 사회가 어려울수록 가장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문제가 증첩된 성폭력, 성착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성교육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는 현재 전국 58개소에 이르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모태가 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서도 매우 효과가 높은 교육 모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기구인 엑팻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의 한국 본부로 가입하여 한국은 물론 아시아지역, UN 레벨에 이르는 아동성착취 예방, 보호, 기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한국인 선원에 의한 남태평양 키리바시 아동성착취 실태조사, 2013년부터 필리핀 코피노 아동 등 한국인에 의한 동남아시아 지역 여성 및 아동 성착취와 아동방임에 대해 현지 조사, 국내·외 캠페인, 1:1 아동 후원, 친자인지·양육비 청구소송 법률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탁틴내일(ECPAT Korea)은 안산, 군포, 전주 등 전국 3개 지부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취약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센터,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tacteen.net](http://www.tactee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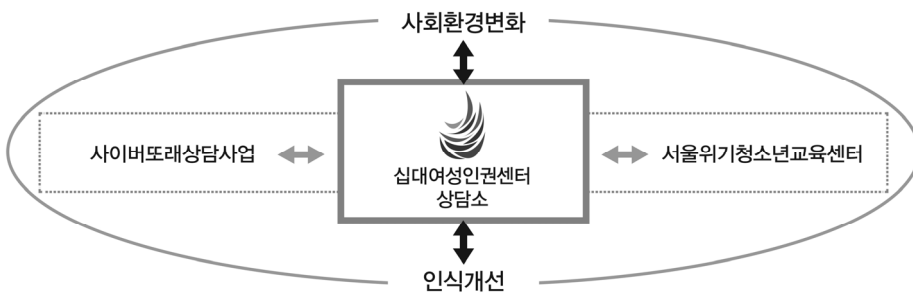
TEL : 02-338-7480 FAX : 02-3141-9339



##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도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도는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도래상담사업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채팅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카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여성·청소년에게 사이버도래상담원들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관련 기관 연계 등 내담자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매매 알선 및 유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매자 및 알선 조장세력들을 경계하는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시행령 제8,9,10조에 의해 운영하는 교육센터로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연간 4~6회의 청소년성장캠프를 운영하며 1년간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사이버도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그리고 본 센터의 법률·의료·심리지원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피해청소년의 발굴부터 예방·법률·의료·심리지원, 주거·일자리 연계, 학업지원, 치유·자활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

- 홈페이지 <http://www.10up.or.kr/>
- 연락처 02-6348-1318 / 010-8232-1319    • 카톡/라인 10upsns









